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645호 2022년 6월 20일(월)

경 상 북 도

■ 고 시

○ 효령병수문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4호) ····· 6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5호) ····· 8

○ 2022년도 오피스텔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6호) ····· 29

○ 상주시 은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일반수도사업인가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7호) ····· 45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8호) ····· 49

■ 공 고

○ 측량업 등록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192호) ····· 55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2-1197호) ····· 56

시 군

■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2-102호) ····· 104

○ 경산 도시관리계획(진량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2-77호) ····· 119

○ 경산 도시관리계획(신대 · 부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시 고시 제2022-78호) ····· 121

○ 군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군위군 고시 제2022-52호) ····· 160

■ 공 고

○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고 제2022-1173호) ····· 170

○ 영주 도시계획시설(2토지 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2-819호) ····· 173

○ 영주 도시계획시설(3토지 제1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2-820호) ····· 176

○ 영주 도시계획시설(1토지 제1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2-821호) ····· 179

○ 군위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위군 공고 제2022-437호) ····· 182

○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영양군 공고 제2022-471호) ····· 193

기 타

■ 공 고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대체 압류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2-65호) ····· 199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대체 압류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2-66호) ····· 201

◈◈◈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4호

효령병수문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군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공공하수도설치사업을 시행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함.

2.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군위군수
- 주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부지면적 등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처리구역 면적(㎢)
효령병수문화 소규모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1022-8번지 일원	95.38	증설 150 (기존 46)	증설 FA-SBR (기존 KDHST)	0.17

다. 사업시행기간 : 2022. 6월 ~ 2024. 5월(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 지 소 재 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계						587	95.38			
1	군위	효령	병수	1022-8	전	287	87.78		군위군	
2	군위	효령	병수	1023	전	300	7.6		군위군	

마. 기타 관계서류는 군위군 맑은물사업소(054-380-7924)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5호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일반현황

1. 산업단지 개요[변경]

1) 명 칭 : 포항철강산업단지

2)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대송면 옥명리, 오천읍 문덕리 일원

3) 면 적 : 8,589,505㎡

4) 감독관청 : 경상북도

▶ 기 정

산업단지명	유 형	관리기관	산업단지 총면적(㎡)	입주계획
포항철강산업단지 (제1,3,4단지)	일반산업단지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8,589,505	234개사

▶ 변 경

산업단지명	유 형	관리기관	산업단지 총면적(㎡)	입주계획
포항철강산업단지 (제1,3단지)	일반공업지역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6,542,248	150개사
포항제4일반산업단지 (제4단지)	일반산업단지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2,047,257	85개사

2. 조성목적

1)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민경제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

2)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자립기반 강화 및 산업기반조성

3) 공장용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입지 확보로 공장용지난 해소와 투자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

4)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화·전문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기술산업 육성

3. 시행방법 및 기간 [추가]

1) 제1단지(일반공업지역)

■ 시행방법 :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기 간 : 1970. 4. ~ 1972. 3.

2) 제3단지(일반공업지역)

■ 시행방법 :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기 간 : 1990. 4. ~ 1994. 12.

3) 제4단지(일반산업단지)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공영개발

■ 기 간 : 2002. 1. ~ 2006. 9.

4. 추진경위 [추가]

1) 제1단지(일반공업지역)

■ 1967. 7.21 경상북도영일군오천및대송면도시계획시설준용인가

(건설부 고시 제516호)

■ 1967. 8.18 경상북도영일군대송면및오천면도시계획사업집행청및실시계획지정인가

(건설부 고시 제578호)

■ 1969. 12.21 용지(1,189천평) 포항제철(주) 인수

■ 1970. 4. 1 포항제철(주)에서 단지조성

(분양가'70년 1,005원/평, '72년 2,372원/평)

■ 1972. 3.21 단지조성 완료

■ 1974. 7.25 사단법인 포항철강공단협의회 설립 인가

(공업단지관리청 공고 제16호)

■ 1976. 11.10 공업단지 관리대상공단 지정

■ 1980. 2.28 공단협의회 해산 및 관리공단 창립 결의

■ 1980. 5.27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법인 설립 인가(경상북도 인가 제80-1호)

2) 제3단지(일반공업지역)

■ 1990. 3. 3 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포철제3연관단지)시행허가
(포항시 고시 제13호-토개공시행)

■ 1990. 4.12 1단계 조성사업 착공

■ 1991. 3. 1 입주대상업체에 분양시작(현 분양가 280,000원/평)

■ 1991. 7. 5 공업단지 관리대상공단 지정(경상북도 고시 제91-247호)

■ 1991. 10.24 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포철제3연관단지2단계)시행허가
(포항시 고시 제241호)

■ 1991. 11. 4 2단계 조성사업 착공

■ 1993. 12.31 1단계 조성사업 준공

■ 1994. 12.31 2단계 조성사업 준공

3) 제4단지(일반산업단지)

■ 2002. 1.24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지정
(경상북도 고시 제2002-21호)

■ 2003. 5.29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2003-180호)

■ 2003. 9.16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03. 11.20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지정

(경상북도 고시 제2003-404호)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변경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2003-405호)

■ 2004. 6.21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2004-141호)

(산업단지 관리대상공단 지정)

■ 2006. 2.15 조성공사 준공

■ 2006. 7. 6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변경지정

(경상북도 고시 제2006-238호)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

(경상북도 고시 제2006-239호)

■ 2006. 9.21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준공인가(경상북도 공고 제2006-670호)

■ 2006. 11. 8 임대전용산업단지 본 지정(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07호)

■ 2007. 1.12 임대전용산업단지 본 지정(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1호)

■ 2008. 3.27 포항4일반산업단지실시계획(변경)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2008-148호)

4)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 1992. 7.16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경상북도 고시 제92-209호)

■ 1993. 8. 9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1993-283호)

■ 1994. 6.13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1994-134호)

■ 1995. 2.21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1995-31호)

■ 1995. 8. 1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1995-143호)

■ 1995. 12.12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1995-223호)

■ 1997. 6.19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1997-113호)

■ 1998. 11.30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1998-271호)

■ 1999. 7.26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경상북도 고시 제1999-173호)

■ 1999. 11.18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경상북도 고시 제1999-279호)

■ 2000. 5. 1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경상북도 고시 제2000-86호)

■ 2002. 8.26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2002-251호)

■ 2004. 6.21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중 개정(경상북도 고시 제2004-141호)

■ 2008. 6.26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경상북도 고시 제2008-304호)

■ 2014. 6.12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4-192호)

■ 2015. 8.24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5-280호)

■ 2016. 8.25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6-223호)

■ 2020. 5.28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170호)

■ 2020. 6.25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02호)

5. 분양현황 [추가]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양현황			조 성 기 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계	8,589,505	8,589,505	-	8,589,505	1970 ~ 2006	경상북도
산업시설구역	6,194,248	6,194,248	-	6,194,248		
지원시설구역	336,066	336,066	-	336,066		
공공시설구역	1,317,327	1,317,327	-	1,317,327		
녹 지 지 역	741,864	741,864	-	741,864		

6. 입주현황 [추가]

구 분	입주업체 수(개)				면 적 (㎡)			
	제조업	지원시설	기타	계	제조업	지원시설	기타	계
계	178	18	39	235	5,359,515	336,066	786,770	6,482,351
2022. 5월	178	18	39	235	5,359,515	336,066	786,770	6,482,351
향후계획	-	-	-	-	-	-	-	-

7. 입지여건(기반시설) [추가]

시설명		'22. 5월말 현재	확충계획			비고
			일정	규모	시행기관	
교통시설	도 로	•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남포항IC 인접 •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포항IC(7Km) • 7번, 28번, 20번 국도, 68번 지방도 인접	-	-	-	산업단지 입지여건
	철 도	• 동해남부선 포항역 8Km • 괴동역(화물전용) 인접	-	-	-	
	항 만	• 단지와 인접한 포항신항 이용 - 하역능력 : 86,184천톤/년 - 접안능력 : 38선좌	-	-	-	
	공 항	• 포항공항 : 5Km	-	-	-	
공급시설	용 수	• 공업용수 : 282천톤/일 • 생활용수 : 141천톤/일	-	-	-	산업단지 기반시설
	전 력	• 신포항전력소 154KV 공급 • 포항변전소, 영일변전소, 대송변전소 22.9KV 공급	-	-	한국전력	
	통 신	• KT 통신선로 공급	-	-	KT	
환경기초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하수종말처리장시설 - 시설규모 : 152천㎥/일	-	-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원 3개소 및 체육시설 2개소	-	-	-	
방재시설		• 유수지 1개소 및 저류조 2개소	-	-	-	
기 타		• 폐기물처리장 2개소	-	-	-	
		• 오·폐수 발생량 : 2,160㎥/일 (공장폐수, 생활오수 합류)	-	-	-	
		• 폐기물 발생량 : 28,983톤/일 - 지정 88톤/일, 일반 28,895톤/일	-	-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변경]

(단위 :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계	8,589,505	6,194,248	336,066	1,317,327	741,864
제1단지	3,930,326	2,779,622	294,172	856,532	-
제3단지	2,611,922	1,879,095	12,015	248,079	472,733
제4단지	2,047,257	1,535,531	29,879	212,716	269,131

※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1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면적 (변경)

▶ 기 정

(단위 : ㎡)

계	재생산업시설	폐기물처리	화물터미널	전력시설	주차장시설
789,300	422,717	207,303	107,304	36,842	12,604

▶ 변 경

(단위 : ㎡)

총면적	재생산업시설	폐기물처리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전력시설	주차장시설
786,770	419,411	207,303	107,304	3,306	36,842	12,604

※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 신·재생에너지시설 추가

※ 재생산업시설 중 3,306㎡ 신·재생에너지시설로 변경

※ 화물터미널 명칭 물류시설로 변경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변경]

1) 입주대상(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중분류10~34업종)으로 하며 포항철강 산업단지 특성상 일관 제철소 생산제품 가공 및 원·부자재 공급 관련 업종의 집단화 유치에 중점을 둔다.

▶ 기 정

구 분	입 주 대 상 (유 치) 업 종
산업시설 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중분류 10~34업종) 다만, 악취, 난 분해성물질,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은 주변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 부동산업(68)중, 비주거용 및 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자 • 지정용도에 의한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주차장운영업, 화물터미널, 지식산업, 정보통신, 전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입주기업체 건축물 지붕에 한함) • 보관 및 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9) (단, 포항국가산업단지 및 포항철강산업단지 철강제품 보관에 한함)
지원시설 구역	• 운송업, 창고업 등 기타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 변 경

구 분	입 주 대 상 (유 치) 업 종
산업시설 구역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10 ~ C34업종) 다만, 악취, 난 분해성물질,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은 주변입지연건을 감안하여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 부동산업(68)중, 비주거용 및 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자 • 지정용도에 의한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주차장운영업, 물류시설, 지식산업, 정보통신, 전력시설. • 지정용도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시설. (단, 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단, 입주기업체 건축물 지붕에 한함) • 보관 및 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9) (단, 포항국가산업단지 및 포항철강산업단지 철강제품 보관에 한함)
지원시설 구역	• 운송업, 창고업 등 기타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해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2) 입주자격(추가)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18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부동산업(L68)은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

○ 부동산업(L68)은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3) 입주제한업종

○ 다음의 업종은 신규입주를 제한한다. 다만, 입지여건상 집단화배치가 필요한 동종(관련)업계 범위 내 업종과 경제유발 및 고용창출효과(여성근로자포함)가 큰 업체일 경우에는 주변민원, 환경성 검토 등을 판단 후 예외로 한다.

구 분	제 한 업 종
제 1 단지 제 3 단지	식료품제조(10), 음료제조(11), 담배제조(12), 섬유제품(13),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1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1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금속가공제품제조(25)업 중 도금업
제 4 단지	식료품제조(10), 음료제조(11), 담배제조(12), 섬유제품(13),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14),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15),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1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22), 비금속광물제품(23),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중 도금업

3.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변경]

1)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면적(총괄)

구 분	면적(㎡)	비율(%)
총 면 적	8,589,505	100
산업시설구역	6,194,248	72.2
지원시설구역	336,066	3.9
공공시설구역	1,317,327	15.3
녹 지 구 역	741,864	8.6

2) 업종별 배치계획(총괄)

업종별 (분류번호)		기 정		변 경		증(△)감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234	6,482,351	235	6,482,351	1	
1차금속 (C24)	계	92	3,597,343	92	3,597,343		
	제1단지	22	1,576,908	22	1,576,908		
	제3단지	29	1,184,573	29	1,184,573		
	제4단지	41	835,862	41	835,862		
조립금속 및 기계 (C25,C29, C30,C31)	계	48	954,263	48	954,263		
	제1단지	11	512,001	11	512,001		
	제3단지	11	97,334	11	97,334		
	제4단지	26	344,928	26	344,928		

업종별 (분류번호)		기 정		변 경		증(△)감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비금속광물 (C23)	계	16	393,860	16	393,860		
	제1단지	10	257,314	10	257,314		
	제3단지	6	136,546	6	136,546		
석유 화학 (C19,C20, C22)	계	12	205,188	12	205,188		
	제1단지	10	189,991	10	189,991		
	제3단지	1	9,661	1	9,661		
	제4단지	1	5,536	1	5,536		
기타제조업 (C16,C17, C26,C27, C28,C29 H52101, H52109)	계	10	208,861	10	208,861		
	제1단지	3	163,431	3	163,431		
	제3단지	3	29,427	3	29,427		
	제4단지	4	16,003	4	16,003		
재생산업 시설 (E38312, E38322)	계	30	422,717	30	419,411		△3,306
	제1단지	4	69,200	4	65,894		△3,306
	제3단지	14	209,689	14	209,689		
	제4단지	12	143,828	12	143,828		
폐기물 처리 (E38)	계	3	207,303	3	207,303		
	제3단지	2	84,751	2	84,751		
	제4단지	1	122,552	1	122,552		

업종별 (분류번호)		기 정		변 경		증(△)감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물류시설	제3단지	1	107,304	1	107,304		
신 · 재생 에너지시설	제1단지			1	3,306	1	3,306
주 차 장	제4단지	1	12,604	1	12,604		
전력시설	계	3	36,842	3	36,842		
	제1단지	1	10,777	1	10,777		
	제3단지	1	19,810	1	19,810		
	제4단지	1	6,255	1	6,255		
지원시설	계	18	336,066	18	336,066		
	제1단지	14	294,172	14	294,172		
	제3단지	2	12,015	2	12,015		
	제4단지	2	29,879	2	29,879		

※ 신 · 재생에너지시설 추가, 재생산업시설 중 3,306㎡ 신 · 재생에너지시설로 변경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2

4. 배치기준

1)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업종별 집단화 배치에 중점을 두되 용수, 전력 등 다소비 업종은 공급시설 주변 배치

2)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거지역 및 인접 업체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구획설정 배치

3)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근업체 생산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배치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1) 지원시설부지는 관리기관이 개발·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기업체 산업 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시설에 우선을 둔다.

2) 지원시설부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부용도의 특정업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입주계약변경 등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용지 최소 임대면적

○ 산업단지 내에서 정상가동 중인 입주기업체가(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산업용지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임대산업용지의 최소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한다.

2) 산업용지의 분할 등

○ 입주기업체는「산집법」제3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의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이후 소유하고 있는 공장 등을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3,305㎡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규정에 의해 분할하고자 하는 자가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 용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 기준

○ 임대산업용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 50년 미만으로 하며, 최소 임대면적은 3,305㎡이상이어야 한다.

○ 임대산업용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산집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토지 사용 승락 후 180일 이내 공장건설에 착수하여야 한다.

○ 임대산업용지내의 임차인은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입주계약내용과 부합되어야 하며, 산집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임대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차권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계약 등이 해지되었을 경우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입주기업체의 결격사유 및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유휴 임대산업용지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은 입주기업 선정 등에 관하여 사전 관리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집법」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한다.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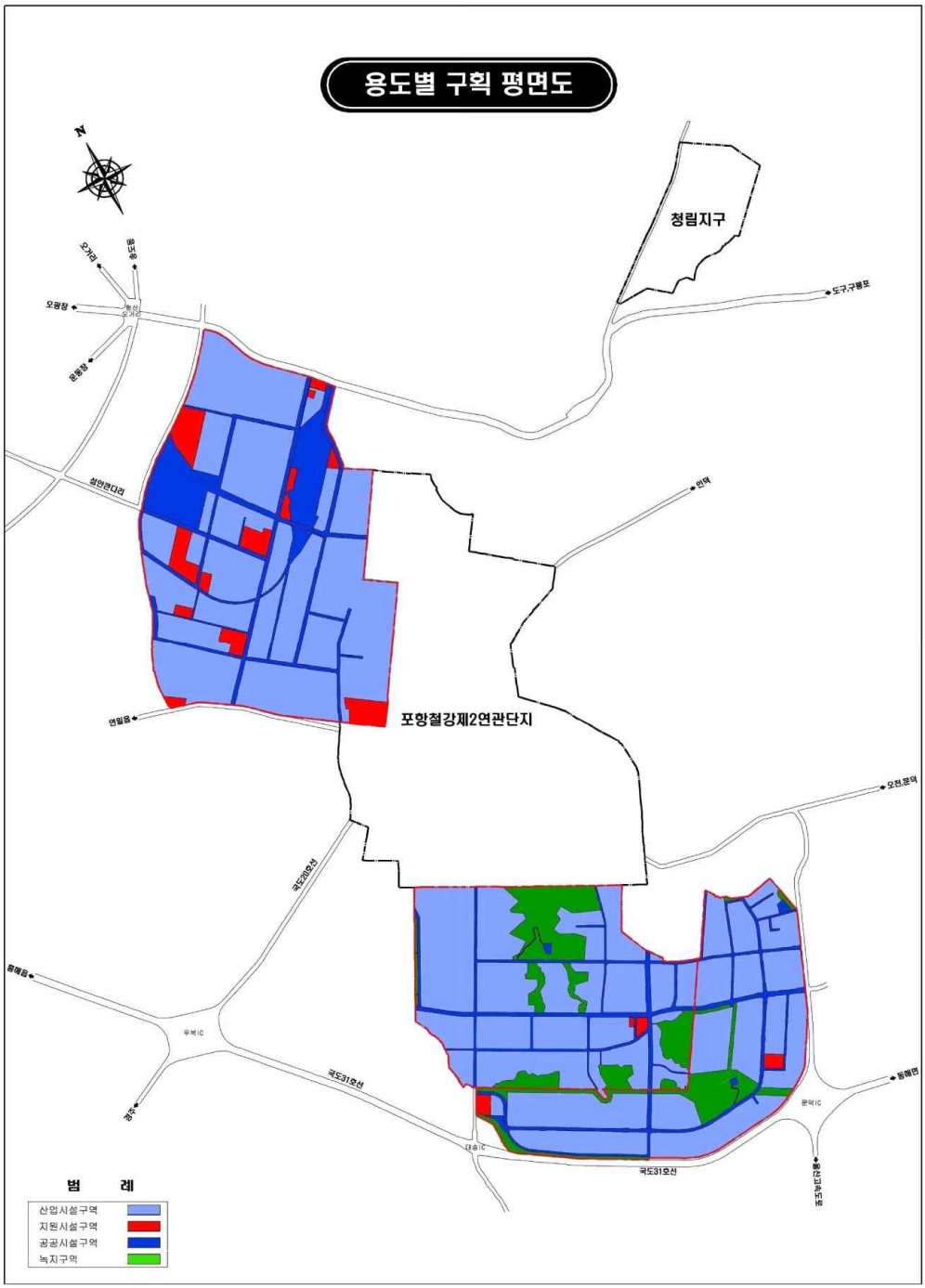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포항시 도시계획과(054-270-38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별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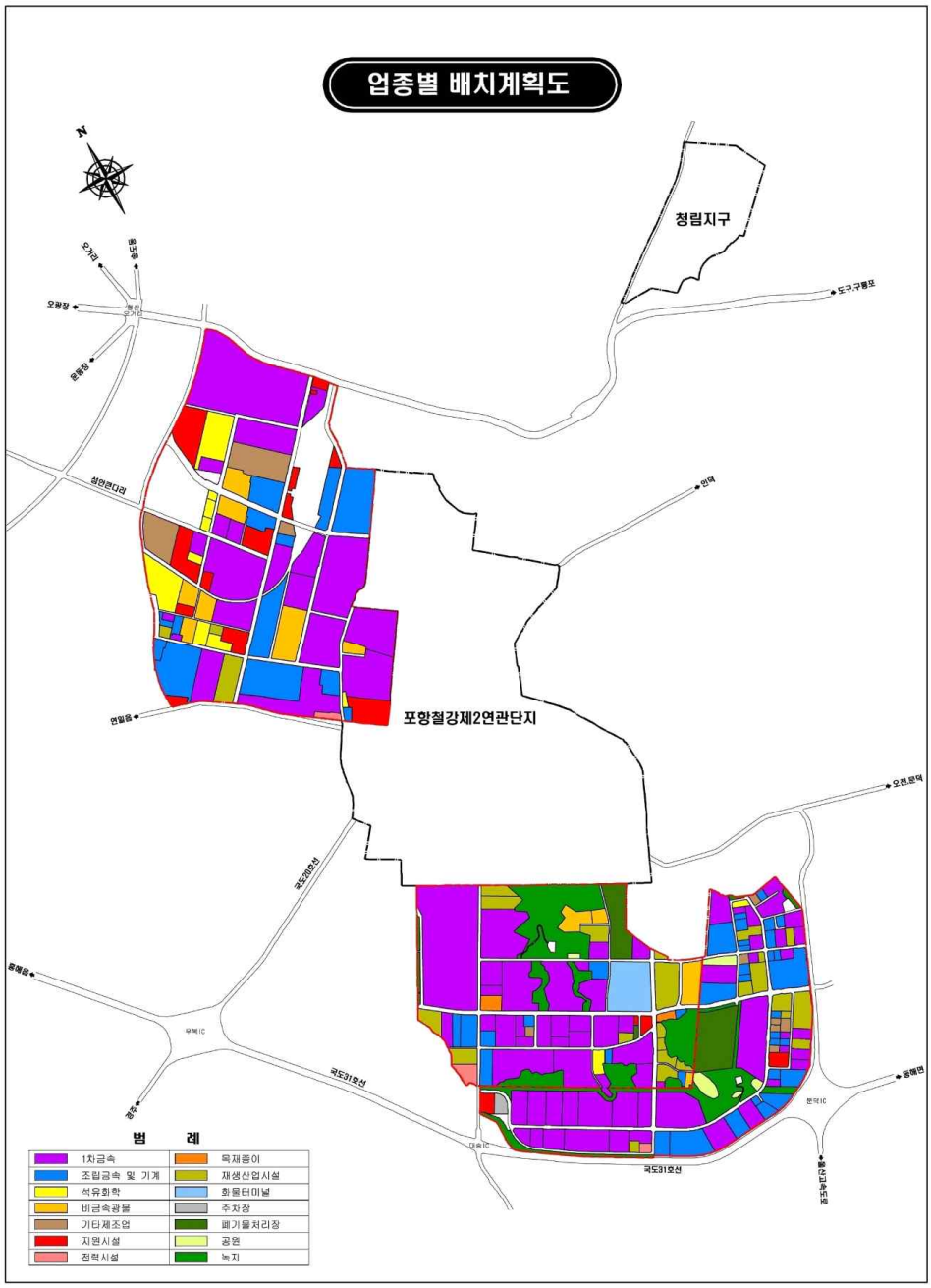
용도별 구획 평면도



[별첨2]

▶ 기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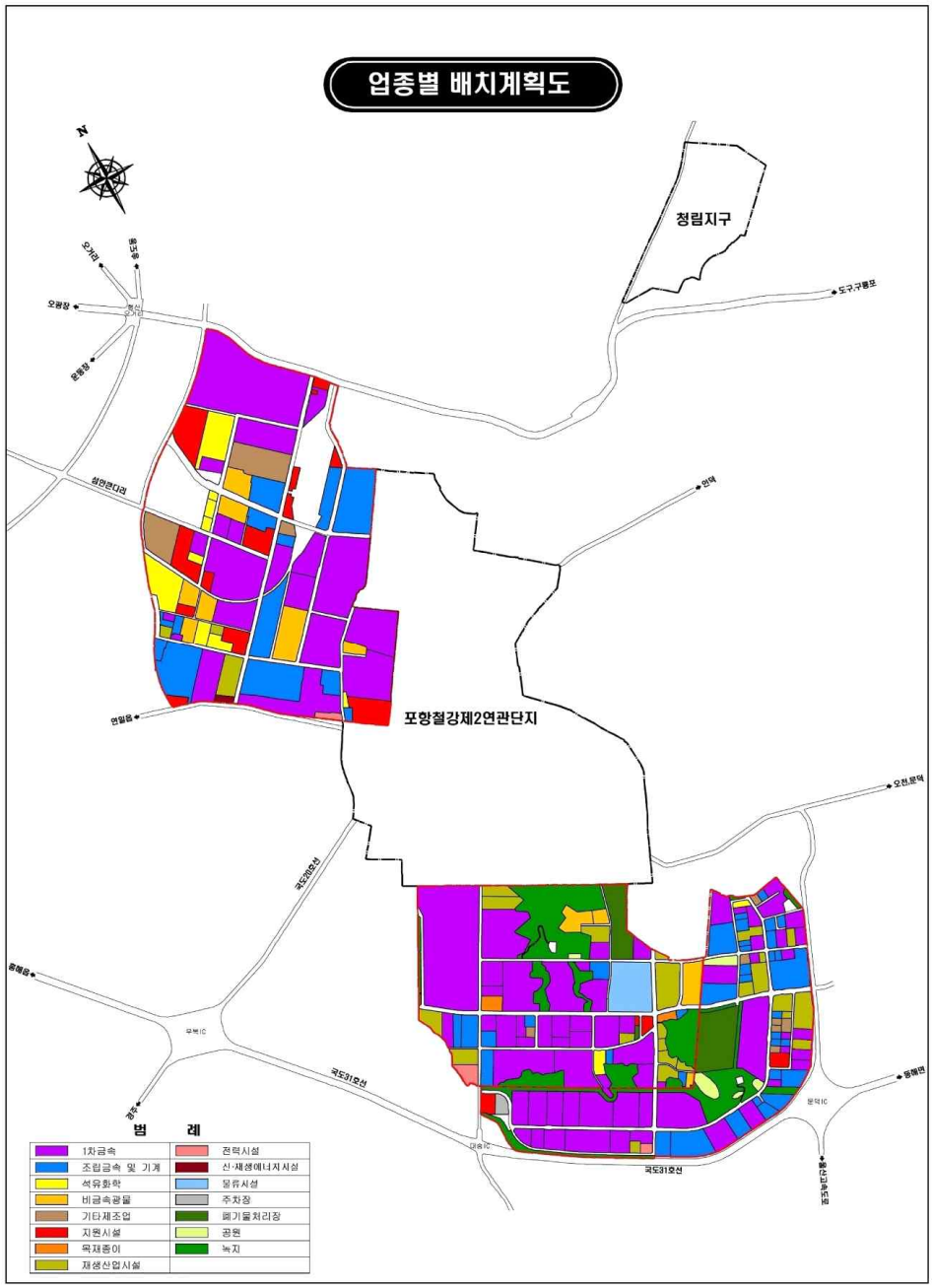
업종별 배치계획도



[별첨2]

▶ 변 경

업종별 배치계획도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6호

2022년도 오피스텔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오피스텔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가격결정 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건 명 : 2022년도 오피스텔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고시

2. 변경내역 : 붙임내역

3. 기타문의 :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전화 : 054-880-2226)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재산정 조정고시 258건 및 기준가격 인하 2건 ZN125T-69(이륜, ZNPA125), ZN125T-Y(이륜, ZNPA125)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붙임1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내역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 272건

○ 재산정(258건), 추가산정(14건)

(단위 : 천원)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01-6	793,000	689,000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03-8	796,000	692,000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13-6	818,000	711,000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40-4	1,010,000	878,000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도동 19-19	900,000	783,000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71-13	885,000	769,000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97-7	795,000	692,000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97-20	569,000	495,000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23-16	583,000	507,000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170-38	733,000	637,000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11	914,000	795,000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432-6	848,000	738,000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928-16	889,000	773,000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이동 647-14	658,000	572,000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392-1	886,000	770,000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342-10	843,000	733,000
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1	909,000	790,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8-16	869,000	756,000
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16-7	969,000	842,000
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49-22	963,000	837,000
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52-4	826,000	779,000
2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81-15	876,000	762,000
2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39-8	891,000	775,000
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39-19	882,000	767,000
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3-7	895,000	778,000
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동 709-2	912,000	793,000
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12-6	913,000	794,000
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 155	855,000	743,000
29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55	905,000	787,000
30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182-3	866,000	753,000
31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188-36	907,000	789,000
32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38	892,000	775,000
33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340-1	977,000	850,000
34	경상북도 경주시 성동동 420-33	831,000	722,000
35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238-11	1,013,000	881,000
36	경상북도 경주시 노서동 26	925,000	804,000
37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66	920,000	800,000
38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205-3	877,000	762,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39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205-4	652,000	567,000
40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302-2	877,000	762,000
41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342-42	830,000	722,000
42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411-14	917,000	797,000
43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76-6	827,000	720,000
44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1798-39	866,000	753,000
45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982-7	647,000	562,000
46	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2982-11	621,000	540,000
47	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2986-1	620,000	539,000
48	경상북도경주시충효동3002	916,000	796,000
49	경상북도경주시동방동29-10	831,000	723,000
50	경상북도경주시동방동32-11	851,000	740,000
51	경상북도경주시도지동34-7	869,000	756,000
52	경상북도경주시황성동326-1	882,000	767,000
53	경상북도경주시황성동507-2	930,000	809,000
54	경상북도경주시용강동266-4	846,000	736,000
55	경상북도경주시용강동1276-3	917,000	797,000
56	경상북도경주시용강동1330-4	902,000	785,000
57	경상북도경주시용강동1339	675,000	587,000
58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586-115	880,000	765,000
59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587-40	925,000	805,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60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695-14	914,000	795,000
61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697-5	860,000	748,000
62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697-147	893,000	777,000
63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733-299	864,000	752,000
64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733-481	882,000	767,000
65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733-894	865,000	752,000
66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773-2	948,000	825,000
67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780-1	948,000	825,000
68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913-10	952,000	828,000
69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914-10	899,000	782,000
70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915-3	899,000	782,000
71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920-2	952,000	828,000
72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953	949,000	826,000
73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953-5	949,000	826,000
74	경상북도경주시시래동1005-9	846,000	735,000
75	경상북도경주시시래동1079	865,000	752,000
76	경상북도경주시구정동440-16	882,000	766,000
77	경상북도경주시구정동441-4	882,000	767,000
78	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729	784,000	682,000
79	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757	744,000	647,000
80	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757-1	766,000	666,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81	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824	969,000	843,000
82	경상북도경주시석장동867-1	888,000	771,000
83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전동리113	885,000	769,000
84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리30-2	922,000	802,000
85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리79-4	880,000	765,000
86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리86	865,000	752,000
87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안강리297-4	789,000	686,000
88	경상북도경주시안강읍안강리298-14	789,000	686,000
89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건천리42-4	849,000	738,000
90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건천리421-12	866,000	752,000
91	경상북도경주시건천읍건천리421-16	865,000	752,000
92	경상북도경주시외동읍문산리950	863,000	750,000
93	경상북도경주시현곡면금장리324-5	892,000	776,000
94	경상북도김천시모암동180-26	796,000	692,000
95	경상북도김천시성내동43-8	868,000	755,000
96	경상북도김천시신음동991-2	831,000	723,000
97	경상북도김천시삼락동1220	781,000	680,000
98	경상북도안동시옥동745-2	633,000	550,000
99	경상북도안동시송천동918-1	797,000	693,000
100	경상북도안동시송천동918-8	798,000	694,000
101	경상북도안동시풍산읍안교리66	776,000	674,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102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31-66	765,000	665,000
103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59-5	886,000	771,000
104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303-2	640,000	556,000
105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309	802,000	698,000
106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1024-12	590,000	513,000
107	경상북도구미시원평동1052-3	906,000	788,000
108	경상북도구미시도량동541-2	829,000	722,000
109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57-7	849,000	738,000
110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406-4	865,000	720,000
111	경상북도구미시봉곡동406-6	885,000	769,000
112	경상북도구미시형곡동144-16	844,000	734,000
113	경상북도구미시신평동355	814,000	708,000
114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532-4	886,000	770,000
115	경상북도구미시광평동578-13	826,000	718,000
116	경상북도구미시사곡동472-1	869,000	756,000
117	경상북도구미시구평동448-4	866,000	753,000
118	경상북도구미시황상동301-23	847,000	737,000
119	경상북도구미시황상동307-1	848,000	737,000
120	경상북도구미시황상동307-59	848,000	737,000
121	경상북도구미시황상동353	757,000	658,000
122	경상북도구미시인의동1005-1	587,000	510,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123	경상북도구미시진평동120-2	827,000	719,000
124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632-2	722,000	628,000
125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46	747,000	649,000
126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46-1	822,000	715,000
127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47	752,000	654,000
128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47-1	804,000	699,000
129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48	739,000	643,000
130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48-2	824,000	716,000
131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48-4	824,000	716,000
132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58-1	736,000	639,000
133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59-1	824,000	716,000
134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61	824,000	716,000
135	경상북도구미시옥계동961-1	824,000	716,000
136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문성리1274	829,000	694,000
137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문성리1277	868,000	755,000
138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문성리1278	848,000	737,000
139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문성리1288	848,000	737,000
140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문성리1288-1	848,000	737,000
141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1-5	701,000	570,000
142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1-9	706,000	570,000
143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1-10	698,000	564,000
144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1-11	701,000	568,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145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1-12	698,000	562,000
146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2-6	685,000	550,000
147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3-1	704,000	565,000
148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3-2	699,000	562,000
149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3-6	686,000	521,000
150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3-7	688,000	553,000
151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3-8	758,000	610,000
152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3-9	669,000	538,000
153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3-10	687,000	552,000
154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4	686,000	551,000
155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4-6	796,000	640,000
156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4-9	723,000	581,000
157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5-8	753,000	610,000
158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5-12	703,000	564,000
159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5-13	703,000	572,000
160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5-14	703,000	569,000
161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5-16	702,000	565,000
162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5-17	702,000	570,000
163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1	675,000	486,000
164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2	675,000	489,000
165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3	703,000	569,000
166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8	758,000	611,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167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9	704,000	566,000
168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10	675,000	485,000
169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11	675,000	486,000
170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12	692,000	498,000
171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6-13	692,000	498,000
172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1	724,000	588,000
173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2	815,000	656,000
174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15	773,000	622,000
175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17	724,000	583,000
176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18	815,000	655,000
177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19	723,000	583,000
178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20	724,000	588,000
179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21	815,000	659,000
180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22	724,000	583,000
181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7-25	773,000	627,000
182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78-3	735,000	591,000
183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78-4	735,000	591,000
184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84	768,000	618,000
185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84-1	771,000	620,000
186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84-2	768,000	618,000
187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85	851,000	685,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188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85-1	851,000	686,000
189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90	813,000	654,000
190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613	719,000	513,000
191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613-1	719,000	512,000
192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613-2	717,000	583,000
193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614	689,000	554,000
194	경상북도영천시야사동216	359,000	312,000
195	경상북도영천시문내동186	624,000	543,000
196	경상북도상주시복룡동511	933,000	803,000
197	경상북도상주시가장동683	853,000	742,000
198	경상북도상주시가장동684	893,000	776,000
199	경상북도문경시문경읍하리47	756,000	657,000
200	경상북도경산시삼남동45-1	849,000	738,000
201	경상북도경산시삼북동275-21	869,000	756,000
202	경상북도경산시삼북동275-31	940,000	817,000
203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72-9	757,000	658,000
204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72-11	847,000	737,000
205	경상북도경산시중방동872-36	900,000	783,000
206	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4-62	942,000	820,000
207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부적리386-3	872,000	758,000
208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391-1	971,000	845,000
209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395-1	851,000	740,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210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397	792,000	689,000
211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397-1	792,000	689,000
212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398	913,000	794,000
213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398-1	913,000	794,000
214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01	718,000	625,000
215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01-1	728,000	634,000
216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04	913,000	794,000
217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06	789,000	686,000
218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06-1	817,000	711,000
219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07-2	786,000	683,000
220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11	913,000	794,000
221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11-1	913,000	794,000
222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12-1	872,000	758,000
223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13	858,000	746,000
224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13-1	857,000	746,000
225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30	823,000	715,000
226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30-1	823,000	715,000
227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31	801,000	697,000
228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31-1	820,000	713,000
229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0	872,000	758,000
230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0-1	872,000	758,000
231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1	962,000	836,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232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1-1	962,000	836,000
233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2	851,000	740,000
234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4	752,000	654,000
235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4-1	748,000	650,000
236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5	872,000	758,000
237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45-1	795,000	692,000
238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51	779,000	676,000
239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452	939,000	817,000
240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서부리214	774,000	670,000
241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서부리214-2	788,000	660,000
242	경상북도의성군봉양면화전리121-2	909,000	790,000
243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금곡리839-1	838,000	729,000
244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금곡리850-5	876,000	762,000
245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진안리473-6	888,000	773,000
246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이촌리28-29	850,000	739,000
247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154-31	834,000	725,000
248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156-19	929,000	813,000
249	경상북도청도군청도읍고수리489-8	908,000	797,000
250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193	821,000	714,000
251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10-166	821,000	715,000
252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259-120	796,000	692,000
253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왜관리689	871,000	757,000

연번	주소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254	경상북도예천군예천읍백전리177-1	742,000	646,000
255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읍내리209-4	872,000	758,000
256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연지리842	851,000	741,000
257	경상북도울진군울진읍연지리842-6	851,000	741,000
258	경상북도울진군후포면삼율리290-1	872,000	758,000
259	경상북도청송군청송읍금곡리850-12	-	801,000
260	경상북도청송군진보면각산리521-2	-	737,000
261	경상북도고령군대가야읍헌문리331-2	-	777,000
262	경상북도경산시압량읍신대리381	-	871,000
263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백전리600-0	-	803,000
264	경상북도영주시가흥동2057	-	720,000
265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성산리546-16	-	786,000
266	경상북도구미시임수동92-93	-	824,000
267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384-8	-	646,000
268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봉산리590-5	-	725,000
269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신당리1446	-	869,000
270	경상북도구미시산동읍신당리1462	-	886,000
271	경상북도상주시냉림동408	-	778,000
272	경상북도상주시낙양동131-2	-	670,000

붙임2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내역

□ 차량(이륜자동차) : 5건

○ 변경(2건), 신규(3건)

(단위 : 천원)

연번	분류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현행)	기준가격 (변경)
1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산	TAIZHOU ZHONGNENG	ZN125T-69	ZNPA125	3,800	2,330
2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산	TAIZHOU ZHONGNENG	ZN125T-Y	ZNPA125	1,990	1,990
3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산	Zhejiang Tianying	TY50QT-18D	TY50QT-18D	-	1,610
4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산	Zhejiang Tianying	TY125T-26D	TY125T-26D	-	2,745
5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산	JINAN QINGOI	BLACK SEVEN	QM125-2X	-	2,826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7호

상주시 은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일반수도사업인가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수도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인가 및 고시하고, 「수도법」 제46조에 따라 협의된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의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 : 상주시 은척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상주시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식수원오염, 수량부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은척면, 외서면, 공검면 미급수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하고자 함.

나. 사업내용

구분	시설계획
송배수 시설	• 배수지 : V = 500㎥ • 송수가압장 : Q = 974㎥/일 (1개소) – 은척가압장 : 20.3㎥/hr × 88mH × 3대 • 배수가압장 : Q = 864㎥/일 (3개소) – 봉상가압장 : 2.5㎥/hr × 32mH × 3대 – 남곡가압장 : 8.1㎥/hr × 46mH × 3대(한방계통), 3.5㎥/hr × 36mH × 3대(남곡, 문암리 계통) – 병암가압장 : 3.9㎥/hr × 67mH × 3대 • 송수관로 : D = 200mm, L = 1.3km • 배수관로 : D = 80 ~ 200mm, L = 31.3km
급수시설	• 급수관로 : D = 16 ~ 50mm, L = 19.1km
기타시설	• 구역유량계(1개소), 감압밸브(4개소), 제수밸브(76개소) • 이토밸브(36개소), 공기밸브(27개소), 소화전(52개소)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외서면, 공검면 일원

5. 급수구역 · 급수인구 및 급수량 (202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일최대 급수량(㎥/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인 · 일)
은척면 외 2개면	1.399	918	일최대 369, 일평균 271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5년 1월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붙임)

9.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승인조서

가.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상주시 고시 제2022-3호, 2022. 1. 6.)

※ 관련도서는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054-537-5515)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끝.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리	당초지번	편입지번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종류	성명	
1	외서	우산	산11-2		임	38,407	2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	정*원			
2	외서	우산	산13-1		임	735,053	30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 ***	정*진			
3	외서	우산	산45		도	2,050	188		국(국토교통부)			
4	외서	우산	산11-8		도	2,214	100		상주시			
5	외서	우산	산11-1		도	9,511	219		상주시			
6	외서	가곡	산66-1		도	971	168		상주시			
7	은척	봉상	657		도	1,812	30		상주시			
8	은척	남곡	302-1		도	379	36		상주시			
9	은척	남곡	405-16		도	105	8		국(농림축산식품부)			
10	은척	남곡	259-2		도	41	1		상주시			
11	공검	병암	463-3		도	234	43		상주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2-17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국도88호선 계리지구 생태통로 설치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같은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사업시행구간)	종점(사업시행구간)	주요통과지	총연장(m)(사업시행구간)	구역결정(변경)이유
당초	국도	88호선	국도 88호선 (영양~울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영양군 수비면 계리 산3-12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산54-3	-	60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사업시 행구간)	종점 (사업시 행구간)	주요 통과지	총연장(m) (사업시행 구간)	구역결정 (변경)이유
변경	국도	88호선	국도 88호선 (영양~울진)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영양군 수비면 계리 산3-12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산54-3	-	60	생태통로 설치공사에 따른 일부구간 변경

2. 접도구역의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88호선	노선명	국도88호선 (영양~울진)
접도구역 또는 위치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ㅇ 시점 : 수비면 계리 산3-12 종점 : 수비면 발리리 산54-3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6.0 ~	보조 간선	4,070	일월면 문암리	수비면 발리리	일반 도로	-	경고 제2008-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2.0	도로		산107-5	산55-10			524호 (08.11.10.)	
변경	소로	3	1	6.0 ~ 12.0	보조 간선 도로	4,070	일월면 문암리 산107-5	수비면 발리리 산55-10	일반 도로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

◦ 국도88호선 계리지구 생태통로 설치공사에 따른 변경

◦ 도로선형개량에 따른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5. 사업시행기간

◦ 국도88호선 계리지구 생태통로 설치공사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4,424	4,424			
1	영양	수비	계	산3-12	임	1,700	1,700	권*원	435 S, LAFAYETTE PARK PL. #314 L.A., CA. 90057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권*숙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 903동 2402호 (충무공동, 혁신도시엘에이치 아파트9단지)	
2	〃	〃	〃	산3-11	임	75	75	권*원	435 S, LAFAYETTE PARK PL. #314 L.A., CA. 90057	
								권*숙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3, 903동 2402호 (충무공동, 혁신도시엘에이치 아파트9단지)	
3	〃	〃	〃	산3-8	임	12	12	국토교통부		
4	〃	〃	〃	산3-13	도	1,081	1,081	경상북도		
5	영양	수비	발리	산52-2	임	328	328	권*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 515동 1206호 (향남시범한우물마을 휴먼시아)	
6	〃	〃	〃	산54-4	임	484	484	권*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 515동 1206호 (향남시범한우물마을 휴먼시아)	
7	〃	〃	〃	산53-2	임	169	169	금*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46, 36동 1402호 (부평동, 동아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					성명	주소	
8	〃	〃	〃	산52-3	도	397	397	영양군		
9	〃	〃	〃	산54-5	임	159	159	국토교통부		
10	〃	〃	〃	산53-1	임	19	19	국토교통부		

7.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 : 열람 장소에 비치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054-850-3291)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9)

※ 첨부서류 : 1천5백분의 1 지형도(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

경상북도 공고 제2022-1192호

측량업 등록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상 호 (대표자)	업 종 (사업자번호)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
㈜고산공간정보 (진창배)	공공측량 (548-81-02872)	03-001401	경상북도 영천시 최무선로 204, 3층(성내동)	2022.06.16.

경상북도 공고 제2022-1197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사회소통정책관」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중대재해 및 지역건축물 안전 관리 등 도정현안해결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명칭변경

ㅇ 사회소통보좌관 → 정책특별보좌관

나.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ㅇ 미래전략기획단장

•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급) → 지방서기관

다. 과·단·담당관·과(科) 등 개편

ㅇ 명칭변경

• 문화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단 →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科) → 「바이러스분석과(科)」

라. 부서단위 분장사무 조정

ㅇ 일자리경제노동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업무 추가

ㅇ 에너지산업과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업무 추가

ㅇ 정책기획관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업무 폐지

2)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의 총수 : 8,007명 → 8,024명(增 17명)

나. 정원조정 내역

ㅇ 관리기관별 조정내역

• 본 청 : 1,478명 → 1,484명(+6)

• 도 의 회 : 138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 5,770명 → 5,772명(+2)

• 지역본부 : 184명 → 193명(+9)

• 사 업 소 : 409명(변동없음)

• 합의제행정기관 : 22명(변동없음)

• 경제자유구역청 : 6명(변동없음)

○ 직종·직렬별 정원 조정

• 정무직 : 3명(변동없음)

• 일반직 : 2,118명 → 2,133명(+15)

- 2급 : 1명(변동없음)
- 2~3급 : 2명(변동없음)
- 3급 : 12명(변동없음)
- 3~4급 : 2명(변동없음)
- 4급 : 97명(변동없음)
- 5급 : 383명 → 384명(+1)
- 6급 : 655명 → 658명(+3)
- 7급 : 713명 → 716명(+3)
- 8급 : 218명 → 225명(+7)
- 9급 : 21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4명 → 15명(+1)

• 별정직 공무원 : 17명(변동없음)

• 연구직 공무원 : 242명 → 243명(+1)

– 연구관 : 44명(변동없음)

– 연구사 : 198명 → 199명(+1)

• 지도직 공무원 : 30명 → 31명(+1)

– 지도관 : 10명(변동없음)

– 지도사 : 20명 → 21명(+1)

• 소방직 공무원 : 5,554명(변동없음)

• 교원 : 43명(변동없음)

다.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1,463,258천원

ㅇ 일반직 86,074천원 × 17명 = 1,463,258천원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nuntang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054-880-2123 Fax)054-880-2149

새바람 행복 경북!

변해야산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사회소통정책관」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임기제공무원 명칭변경

○ 사회소통보좌관 → 정책특별보좌관

나. 개방형직위 지정해제

○ 미래전략기획단장

지방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 4급) → 지방서기관

다. 과·단·담당관·과(科) 등 개편

○ 명칭변경

• 문화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단 →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科) → 「바이러스분석과(科)」

라. 부서단위 분장사무 조정

○ 일자리경제노동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업무 추가

○ 에너지산업과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업무 추가

○ 정책기획관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업무 폐지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련법령: 붙임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정무”를 “정책”으로, “사회소통보좌관 및”을 “정책특별보좌관 및”으로, “사회소통보좌관과”를 “정책특별보좌관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19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제17조제1항 중 “전국체전기획단”을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국체전기획단장”을 각각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그 밖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감염병조사과、수인성질환과、신종감염병과、약품화학과、식품분석과”를 “감염병조사과、수인성질환과、바이러스분석과、약품화학과、식품분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염병조사과장、수인성질환과장、신종감염병과장、약품화학과장”을 “감염병조사과장、수인성질환과장、바이러스분석과장、약

품화학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종감염병과장” 을 “바이러스분석과장” 으로 한다.

제47조의6제5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좌기관) ① ~ ③ (생 략) ④ 정무 및 재정 분야에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사회소통보좌관 및 재정특별보좌관을 두며, 사회소통보좌관과 재정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보좌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 ---------- ---------- - 정책특별보좌관 및 ---------- ----- 정책특별보좌관과 ------- ---------- ---------- ----------.
제8조(미래전략기획단)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미래전략기획단)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② (생 략)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 행	개 정 안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18. 삭 제	
19.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20.·21. 삭 제	
22.·23. (생 략)	22.·2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일자리경제실에 두는 과) ①·② (생 략)	제14조(일자리경제실에 두는 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27. (생 략)	1. ~ 27. (현행과 같음)
〈신 설〉	28.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문화산업	제17조(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과) ① ----------

현 행	개 정 안
과 · 문화유산과 · 관광정책과 · 관광마케팅과 · 체육진흥과 및 전국체전기획단을 둔다.	----------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 · 관광마케팅과장 · 체육진흥과장 및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산업과장 및 관광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1.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기획 총괄 및 조정	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14. 그 밖에 전국체전 등 5개 대회 개최 준비 및 후속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보건연구부) ① 보건연구부에 감염병조사과、수인성질환과、신종감염병과、약품화학과、식품분석과 및 포항농수산물검사소를 둔다.	제36조(보건연구부) ① ---------- 감염병조사과、수인성질환과、바이러스분석과、약품화학과、식품분석과----------.
② 감염병조사과장、수인성질환과장、신종감염병과장、약품화학과장 및 식품분석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포항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감염병조사과장、수인성질환과장、바이러스분석과장、약품화학과장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신종감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바이러스분석과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의6(동해안전략산업국) ① ~ ④ (생 략)	제47조의6(동해안전략산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1.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도의 과·담당관 등의 설치) 시·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2. 본청의 담당관·과장(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기획 담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담당 과장
서울특별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5명, 이 중 1명은 재난안전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부산광역시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인천광역시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2명, 감사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세종특별 자치시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령
경기도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명, 이 중 1명은 비상기획 업무 수행)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1명)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준감

구분	기획 담당 담당관	담당관	과장	소방담당 과장
강원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2명, 감사업무 및 비상기획 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1명, 감사업무 수행)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정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담당관 중 1명은 1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담당관 중 7명은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6항에 따라 경기도의 행정(2)부지사의 사무로 분장된 지역에 두는 소방담당 과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담당 과장 중 1명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4.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실 · 국 · 본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명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의 과장과 담당관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10명의 범위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위 표의 보좌 ·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음

을 원칙으로 한다.

6. 제6조제8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위 표 중 복수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는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금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체전기획단을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구설치 사항으로 비용 수반이 없으므로,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심화중(054-880-2123)

새바람 행복 경북!

변해야산다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중대재해 및 지역건축물 안전 관리 등 도정현안해결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사무기능 조정에 맞게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8,007명 → 8,024명(增 17명)

나. 정원조정 내역

○ 관리기관별 조정내역

- 본 청 : 1,478명 → 1,484명(+6)
- 도 의 회 : 138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 5,770명 → 5,772명(+2)
- 지역본부 : 184명 → 193명(+9)
- 사 업 소 : 409명(변동없음)
- 합의제행정기관 : 22명(변동없음)
- 경제자유구역청 : 6명(변동없음)

○ 직종·직렬별 정원 조정

• 정무직 : 3명(변동없음)

• 일반직 : 2,118명 → 2,133명(+15)

- 2급 : 1명(변동없음)
- 2~3급 : 2명(변동없음)
- 3급 : 12명(변동없음)
- 3~4급 : 2명(변동없음)
- 4급 : 97명(변동없음)
- 5급 : 383명 → 384명(+1)
- 6급 : 655명 → 658명(+3)
- 7급 : 713명 → 716명(+3)
- 8급 : 218명 → 225명(+7)
- 9급 : 21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14명 → 15명(+1)

• 별정직 공무원 : 17명(변동없음)

• 연구직 공무원 : 242명 → 243명(+1)

- 연구관 : 44명(변동없음)
- 연구사 : 198명 → 199명(+1)

• 지도직 공무원 : 30명 → 31명(+1)

- 지도관 : 10명(변동없음)
- 지도사 : 20명 → 21명(+1)

• 소방직 공무원 : 5,554명(변동없음)

• 교원 : 43명(변동없음)

다. 정원조정에 따른 소요경비 : 1,463,258천원

○ 일반직 86,074천원 × 17명 = 1,463,258천원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련법령: 붙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6. 관련부서 협의

○ 예산관련 : 비용추계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경상북도 규칙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 6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 략)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⑤ (생 략)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중대재해 및 지역건축물 안전 관리 등 도정현안해결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안 제2조) 할 경우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1)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안 제2조)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024명으로 한다.

(단위 : 명)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007	8,024	+133	
본 청	1,478	1,484	+6	
도의회	138	138	-	
직속기관	5,770	5,772	+2	
지역본부	184	193	+9	
사업소	409	409	-	
합의제행정기관	22	22	-	
경제자유구역청	6	6	-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한다.

나. 일반직 1인당 인건비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가.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1]에서와 같이 2022년 14억 63백만원을 비롯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75억 2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 소요액 : 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일반직	7,524,034	1,463,258	1,483,744	1,504,516	1,525,579	1,546,937

** 일반직 :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및 2022년도 보수 인상율 1.4%를 적용하여 산정

4. 부대의견

가. 2022년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일반직 : 86,074천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보수인상율은 2022년도 보수인상율 1.4%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 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작 성 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지방행정주사 심화중(054-880-212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가. 대 상

- 중대재해 등 도정현안해결 및 신규 행정수요 인력 17명

나. 방 법

〈비용 추계 방법〉

‣ 일반직 공무원 : 1인당 인건비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

2. 공무원 정원의 총수(개정안 제2조)

가. 도에 두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고려사항 : 비용추계 범위에 대한 가정

-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매년 보수인상율 등에 따라 운영경비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매년 인상되는 보수인상율은 2022년도 기준인 1.4%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실제 연도별 소요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 공무원 1인당 기준인건비 : 2022년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직	소 방 직	비 고
인 건 비	86,074	81,107	

3.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가. 이상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75억 2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경비 추정 : 2022 ~ 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일반직	7,524,034	1,463,258	1,483,744	1,504,516	1,525,579	1,546,937

** 일반직 :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 및 연도별 보수인상율 1.4%를 적용하여 산정

* 도에 두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정경비를 산정함에 있어, 2022년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2022년도 기준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2023 ~ 2026년도는 2022년도 보수인상율(1.4%)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요를 사전에 예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정 경비는 실제 연도별 운영경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별표1]

경상북도 직급、직렬별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총계	8,024	1,484	138	5,772	193	409	22	6
정무직 계	3	1					2	
일반직 계	2,133	1,297	130	122	182	376	20	6
2급 소계	1				1			
이사관	1				1			
2~3급 소계	2	1	1					
이사관 · 부이사관	2	1	1					
3급 소계	12	9		1	2			
부이사관	12	9		1	2			
3~4급 소계	2	2						
부이사관 · 서기관	2	2						
4급 소계	97	63	9	5	9	9	1	1
행정	34	22	7		2	1	1	1
기술	4	2			1	1		
행정 · 기술	52	37	2	5	5	3		
기술 · 농업연구관	1					1		
기술 · 녹지연구관	1					1		
기술 · 수의연구관	2	1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기술·해양수산연구관	1				1			
행정·기술·학예연구관	1	1						
기술·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1					1		
5급 소계	384	284	20	11	31	33	5	
행정	201	152	17	9	11	7	5	
공업	4	3			1			
농업	8	8						
녹지	7	4				3		
수의	1	1						
해양수산	6				6			
보건	1	1						
의무	1	1						
환경	1	1						
시설	23	21				2		
방송통신	2	2						
운전	1	1						
행정·사회복지	6	6						
행정·사서	2					2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12	8			4			
행정·농업	11	1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 녹지	7	4				3		
행정 · 해양수산	2				2			
행정 · 보건	1	1						
행정 · 환경	3	3						
행정 · 시설	26	22	1		3			
행정 · 방송통신	2	2						
행정 · 학예연구관	2	1		1				
공업 · 환경	2	2						
공업 · 시설	3	1				2		
농업 · 수의	2	2						
농업 · 농업연구관	1					1		
녹지 · 시설	2	2						
녹지 · 녹지연구관	3					3		
수의 · 수의연구관	10	2				8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관	3				3			
보건 · 약무	1	1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공업 · 시설	1	1						
행정 · 농업 · 수의	2	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 식품위생	1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 보건 · 약무	1	1						
행정 · 보건 · 간호	4	4						
행정 · 보건 · 환경	3	2		1				
행정 · 환경 · 해양수산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행정 · 시설 · 학예연구관	1	1						
공업 · 환경 · 시설	2	2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행정 · 공업 · 약무 · 간호	1	1						
행정 · 농업 · 녹지 · 환경	1	1						
행정 · 보건 · 약무 · 간호	1	1						
사회복지 · 보건 · 의무 · 간호	1	1						
공업 · 보건 · 환경 · 시설	1	1						
농업 · 수의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1					1		
6급 소계	658	427	34	31	54	102	8	2
행정	270	185	31	14	11	19	8	2
세무	7	7						
전산	17	13		4				
사회복지	6	6						
사서	2			1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속기	1		1					
공업	21	15		2	3	1		
농업	20	15				5		
녹지	27	11				16		
수의	28	1				27		
해양수산	20				20			
보건	3	3						
식품위생	1	1						
간호	1	1						
환경	9	8			1			
시설	72	58		1	2	11		
방송통신	10	9	1					
시설관리	1					1		
운전	9	5		1	1	2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4	1		2		1		
열관리운영	2			1		1		
행정 · 세무	4	4						
행정 · 전산	9	8				1		
행정 · 사회복지	6	5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 사서	1					1		
행정 · 공업	13	8			3	2		
행정 · 농업	5	5						
행정 · 녹지	4	3				1		
행정 · 해양수산	7				7			
행정 · 보건	4	4						
행정 · 환경	4	4						
행정 · 시설	14	12	1		1			
전산 · 방송통신	1			1				
공업 · 농업	1			1				
공업 · 환경	3	3						
공업 · 시설	2	1				1		
농업 · 녹지	1	1						
농업 · 수의	3	3						
농업 · 농업연구사	4	2				2		
녹지 · 녹지연구사	1					1		
수의 · 수의연구사	8	2				6		
해양수산 · 환경	1				1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사	4				4			
보건 · 식품위생	2	2						
보건 · 약무	2	2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보건 · 간호	4	4						
보건 · 환경	2	2						
의료기술 · 간호	1	1						
환경 · 시설	1	1						
행정 · 전산 · 환경	1	1						
행정 · 사회복지 · 보건	1	1						
행정 · 공업 · 환경	1	1						
행정 · 농업 · 수의	3	3						
행정 · 녹지 · 시설	1	1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농업 · 수의 · 농업연구사	2					2		
보건 · 간호 · 의료기술	1	1						
7급 소계	716	415	44	39	57	152	6	3
행정	288	195	36	15	17	17	5	3
세무	7	7						
전산	16	12	1	1	1	1		
사회복지	6	6						
사서	1			1				
속기	4		4					
방호	1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공업	44	14		10	4	16		
농업	26	15				11		
녹지	28	9				19		
수의	46	3				43		
해양수산	18	1			17			
보건	4	4						
식품위생	2	2						
간호	3	2		1				
환경	7	7						
시설	62	42	1	1	3	15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10	6		2	1	1		
위생	2	1				1		
시설관리	2			1	1			
운전	22	10	1	3	3	5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1		1	2			
행정 · 세무	2	2						
행정 · 전산	11	10					1	
행정 · 사회복지	11	10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 사서	4					4		
행정 · 공업	5	4			1			
행정 · 농업	6	5			1			
행정 · 녹지	1					1		
행정 · 보건	2	2						
행정 · 의료기술	1	1						
행정 · 간호	1			1				
행정 · 환경	4	3		1				
행정 · 시설	14	11			1	2		
행정 · 학예연구사	2	1			1			
전산 · 환경	1	1						
전산 · 방송통신	1			1				
공업 · 농업	1					1		
공업 · 해양수산	1				1			
공업 · 환경	1	1						
공업 · 시설	2					2		
공업 · 방송통신	1	1						
농업 · 수의	4	3				1		
농업 · 농업연구사	1					1		
수의 · 수의연구사	8	1				7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사	2				2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보건 · 식품위생	4	4						
보건 · 의료기술	1	1						
보건 · 간호	3	3						
보건 · 환경	1	1						
식품위생 · 약무	1	1						
환경 · 시설	2	2						
시설 · 해양수산	1				1			
행정 · 농업 · 해양수산	1	1						
행정 · 보건 · 식품위생	1	1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보건 · 환경	3	3						
행정 · 보건 · 약무 · 간호	1	1						
농업 · 수의 · 농업연구사	1					1		
농업 · 수의 · 농업연구사 · 수의연구사	1					1		
8급 소계	225	84	15	29	23	74		
행정	70	38	4	10	5	13		
세무	2	2						
전산	3	2				1		
사회복지	2	2						
사서	2	1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속기	3		3					
공업	26	2		7	3	14		
농업	5					5		
녹지	10	1				9		
해양수산	10				10			
보건	1	1						
식품위생	3	1		2				
간호	2	2						
시설	30	13		1		16		
방재안전	3	3						
방송통신	8	4	2		1	1		
위생	1			1				
시설관리	5			1		4		
운전	20	1	4	5	2	8		
전기운영	3		1	2				
사육운영	1				1			
행정 · 세무	1	1						
행정 · 전산	1	1						
행정 · 사회복지	1	1						
행정 · 사서	3					3		
행정 · 보건	1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 시설	1	1						
공업 · 환경	2	2						
해양수산 · 해양수산연구사	1				1			
보건 · 식품위생	1	1						
보건 · 간호	2	2						
행정 · 보건 · 환경	1	1						
9급 소계	21	3	4	3	5	6		
행정	5	1	3			1		
사서	1					1		
공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4				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운전	5			2	1	2		
사무운영	1		1					
전문경력관 소계	15	9	3	3				
가군 소계	3	2		1				
비상계획관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VTR촬영편집기사	1	1						
나군 소계	9	5	2	2				
화생방관리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2			2				
VTR촬영편집기사	1	1						
통상주재원	1	1						
투자통상요원	1	1						
디지털영상운용연구원	1	1						
사진영상촬영요원	2		2					
다군 소계	3	2	1					
홍보연구원	1	1						
사진영상촬영요원	1		1					
촬영편집기사	1	1						
별정직 계	17	8	8			1		
1급상당 소계	1	1						
지방관리관 · 경제부지사	1	1						
4급상당 소계	3	1	2					
국제관계대사	1	1						
행정 · 별정(전문위원)	1		1					
행정 · 기술 · 별정(전문위원)	1		1					
5급상당 소계	9	4	5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비서관	4	4						
행정 · 별정(전문위원)	3		3					
행정 · 농업 · 별정(전문위원)	1		1					
행정 · 시설 · 별정(전문위원)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상당 소계	3	1	1			1		
비서요원	2	1				1		
의장비서	1		1					
연구직 계	243	6		194	11	32		
연구관 소계	44			43		1		
농업연구관	24			23		1		
보건연구관	6			6				
환경연구관	8			8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6			6				
연구사 소계	199	6		151	11	31		
학예연구사	2	1				1		
기록연구사	3	3						
공업연구사	2	2						
농업연구사	79			66		13		
녹지연구사	10					10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수의연구사	7					7		
해양수산연구사	10				10			
보건연구사	34			34				
환경연구사	48			48				
농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 보건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 환경연구사	1			1				
해양수산연구사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1				1			
지도직 계	31			31				
지도관 소계	10			10				
농촌지도관	10			10				
지도사 소계	21			21				
농촌지도사	21			21				
소방직 계	5,554	172		5,382				
소방정	27	5		22				
소방령	109	20		89				
행정5급 · 소방령	1	1						
소방경	408	23		385				
행정6급 · 소방경	1	1						
소방위	444	21		423				

기관별 /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7급 · 소방위	1	1						
소방장	716	43		673				
소방교	1,138	24		1,114				
소방사	2,709	33		2,676				
교원 계	43			43				
총장	1			1				
교수	31			31				
조교	11			11				

◈◈◈

안동시 고시 제2022-1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안 동 시 장

1. 사업명칭 : 안동시 용상동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 주식회사 건영 대표이사 김현걸
- 변경 : 주식회사 건영 대표이사 김민홍

나. 주소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0층(청담동, 금하빌딩)
-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4가길 6 (방배동, 현빌딩)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산46-1번지 일원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 업 비	비 고
분양주택	○ 사업면적 : 38,200.0㎡ ○ 대지면적 : 22,625.0㎡ ○ 건축연면적 : 59,901.4229㎡ ○ 건설규모 : 아파트 19층 이하, 7동,458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108,386,754천원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 2019. 10. ~ 2021. 10.

- 변경 : 2022. 07. ~ 2025. 07.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붙임1〉

다.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7. 관계서류는 안동시청 건축과(☎054-840-5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1]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산4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소공원)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중로3-6호선 외 2개소, 소공원 1개소)사업

- 도로 : 중로3-6호선, 중로3-22호선, 소로3-56호선

- 소공원 : 용상1 소공원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1) 도로(중로3-6호선)개설

○ 사업면적 : 3,203.00㎡

○ 도로개설 : B(폭)=12~15m, L(연장)=2,280m중 구역내(L=322m) 미개설구간 개설

2) 도로(중로3-22호선)개설

○ 사업면적 : 1,670.00㎡

○ 도로개설 : B(폭)=12m, L(연장)=147m 전구간 개설

3) 도로(소로3-56호선)개설

○ 사업면적 : 1,559㎡

○ 도로개설 : B(폭)=6m, L(연장)=269m 전구간 개설

4) 비탈면(소로3-56호선)

○ 사업면적 : 7,145㎡

5) 소공원(용상1 소공원)개설

○ 사업면적 : 1,528.00㎡ 전구간 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있음)

○ 성 명

- 기정 : 주식회사 건영 대표이사 김현걸
- 변경 : 주식회사 건영 대표이사 김민홍

○ 주 소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10층 (청담동, 금하빌딩)
-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34가길 6 (방배동, 현빌딩)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있음)

○ 착수예정일 : (기정) 2019년 10월 01일, (변경) 2022년 7월 1일

○ 준공예정일 : (기정) 2021년 10월 31일, (변경) 2025년 7월 9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변경있음)

◦ 중로3-6호선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안동	용상	968-7	대	204	4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68-7	대	204	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2	기정	〃	〃	968-8	대	197	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68-8	대	197	4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3	기정	〃	〃	968-9	대	194	3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68-9	대	194	3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소	성명	
4	기정	〃	〃	968-10	대	219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68-10	대	219	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5	기정	〃	〃	968-11	도	60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68-11	도	609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6	기정	〃	〃	985-2	대	168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85-2	대	168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7	기정	〃	〃	986-1	대	209	3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변경	〃	〃	986-1	대	209	3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8	기정	〃	〃	986-2	대	226	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86-2	대	226	4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9	기정	〃	〃	986-3	대	387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86-3	대	387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10	기정	〃	〃	986-4	대	128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86-4	대	128	2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1	기정	〃	〃	986-5	대	113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86-5	대	113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12	기정	〃	〃	986-6	대	122	122		안동시	
13	기정	〃	〃	986-7	대	25	25		안동시	
14	기정	〃	〃	987-4	대	17	17		안동시	
	변경	〃	〃	968-19	도	1,142	17		안동시	
15	기정	〃	〃	987-12	전	307	158		안동시	
16	기정	〃	〃	987-16	대	12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987-16	대	12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17	기정	〃	〃	987-17	대	20	20		안동시	
18	기정	〃	〃	1193	전	533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1193	전	533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9	기정	〃	〃	1193-7	전	224	6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1193-7	전	224	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20	기정	〃	〃	1193-12	전	338	338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5길 28, 302호	조수연외 2인	
	변경	〃	〃	1193-12	전	338	338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서중리5길 28, 302호	조수연외 2인	
21	기정	〃	〃	1193-13	전	444	440	인천 남구 숭의동 2-57	안동시외 1인	
22	기정	〃	〃	1193-14	전	40	40	인천 남구 숭의동 2-57	안동시외 1인	
23	기정	〃	〃	1194	대	462	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1194	대	462	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24	기정	〃	〃	1194-1	대	407	407	서울 강남구 방배동 862-26	안동시외 6인	
25	기정	〃	〃	1195	대	300	9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변경	〃	〃	1195	대	300	9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26	기정	〃	〃	1195-15	대	234	234	서울 강남구 방배동 862-26	안동시외 6인	
27	기정	〃	〃	1195-17	대	71	9		안동시	
28	기정	〃	〃	1195-18	대	40	2		안동시	
29	기정	〃	〃	1195-19	전	154	154		안동시	
30	기정	〃	〃	1195-20	임	55	55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6-18	이형중	
31	기정	〃	〃	1196	천	1,468	154		국토교통부	
32	기정	〃	〃	1524-10	도	7	7		국토교통부	
33	기정	〃	〃	1524-39	대	18	18		재무부	
34	기정	〃	〃	1524-40	대	13	13		재무부	
35	기정	〃	〃	1543-1	구	13,044	59		농림축산식품부	
36	기정	〃	〃	1543-84	대	53	53		재무부	
37	기정	〃	〃	1543-106	대	21	21		안동시	
38	기정	〃	〃	1543-107	대	68	68		재무부	
39	기정	〃	〃	1543 -108	대	6	6		안동시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소	성명	
40	기정	〃	〃	1545	구	886	45		농림축산식품부	
41	기정	〃	〃	1535-4	도	578	9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기정	22,621	3,203			
					변경	23,746	3,203			

◦ 중로3-22호선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안동	용상	1193	전	533	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1193	전	533	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2	기정	〃	〃	1195-17	대	71	62		안동시	
3	기정	〃	〃	1195-18	대	40	5		안동시	
4	기정	〃	〃	1545	구	886	292		농림축산식품부	
5	기정	〃	〃	산46-1	임	33,007	4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변경	〃	〃	산46-1	임	33,007	4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 타워)	(주)무궁화신탁	
6	기정	〃	〃	산46-6	도	251	9		안동시	
7	기정	〃	〃	산49-1	구	727	708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35,515	1,670			

◦ 소로3-56호선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기정	안동	용상	산46-1	임	33,007	1,28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산46-1	임	33,007	1,28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 타워)	(주)무궁화신탁	
2	기정	〃	〃	산49	임	2,611	27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변경	〃	〃	산49	임	2,611	2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합 계						35,618	1,559			

◦ 소로3-56호선(비탈면)

구분		위치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1	기정	안동	용상	산46-1	임	33,007	6,5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산46-1	임	33,007	6,5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2	기정	〃	〃	산49	임	2,611	6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소	성명	
	변경	〃	〃	산49	임	2,611	6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합 계						35,618	7,145			

◦ 용상1 소공원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	동			공부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안동	용상	산46-1	임	33,007	1,3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아시아신탁(주)	
	변경	〃	〃	산46-1	임	33,007	1,33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무궁화신탁	
2	기정	〃	〃	산46-6	도	251	189		안동시	
합 계						33,258	1,528			

경산시 고시 제2022-77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진량초등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717번지 일원의 경산 도시관리계획(진량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임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학교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0	진량초교	초등학교	진량읍 신상리 717번지 일원	13,821	증) 491	14,312	경상북도고시 제1990-35호 (1990.3.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진량초교	• 면적 변경 - A = 13,821㎡ → 14,312㎡ (증 491㎡)	• 현재 진량초등학교의 학교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현황에 맞게 학교시설로 편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면 : 별첨(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경산시 고시 제2022-78호

경산 도시관리계획(신대·부적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경산 도시관리계획(신대·부적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신대·부적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신대 · 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후		
주거지역	계		450,854.5	-	450,854.5	100.0	
	일반주거지역	소 계	358,924.0	-	358,924.0	79.7	
		제1종	104,333.4	-	104,333.4	23.1	
		제2종	51,012.3	-	51,012.3	9.8	
		제3종	203,578.3	-	203,578.3	5.1	
	준주거지역		91,930.5	-	91,930.5	1.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후		
기정	신1	신대 · 부적지구 제1종지구 단위 계획구역	신대 · 부적지구 도시개발구역(경산시 압량읍 신대리 579번지 일원)	450,854.5	-	450,854.5	경상북도고시 제2005-33호 (2005. 2. 3)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있음)

1)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① 도로 총괄표(변경있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49	17,024 (8,418)	460,325.1 (116,509.9)	18	4,162 (4,162)	59,148.3 (59,148.3)	18	7,002 (3,482)	153,478.2 (46,274.1)	13	5,860 (774)	247,698.6 (11,087.5)
	변경		17,024 (8,418)	460,463.7 (116,648.5)	19	4,182 (4,182)	59,399.0 (59,399.0)		7,002 (3,482)	153,478.2 (46,274.1)	12	5,840 (754)	247,586.5 (10,975.4)
광로	기정	1	5,455 (369)	245,475 (8,863.9)	–	–	–	–	–	–	1	5,455 (369)	245,475 (8,863.9)
	변경		5,455 (369)	245,475 (8,863.9)		–	–		–	–		5,455 (369)	245,475 (8,863.9)
대로	기정	2	3,472 (447)	109,541.4 (12,199.8)	–	–	–	2	3,472 (447)	109,541.4 (12,199.8)	–	–	–
	변경		3,472 (447)	109,541.4 (12,199.8)		–	–		3,472 (447)	109,541.4 (12,199.8)		–	–
중로	기정	7	3,401 (2,906)	62,785.2 (52,922.7)	3	1,615 (1,615)	33,097.2 (33,097.2)	4	1,786 (1,291)	29,688 (19,825.5)	–	–	–
	변경		3,401 (2,906)	62,785.2 (52,922.7)		1,615 (1,615)	33,097.2 (33,097.2)		1,786 (1,291)	29,688 (19,825.5)		–	–
소로	기정	39	4,696 (4,696)	42,523.5 (42,523.5)	15	2,547 (2,547)	26,051.1 (26,051.1)	12	1,744 (1,744)	14,248.8 (14,248.8)	12	405 (405)	2,223.6 (2,223.6)
	변경		4,696 (4,696)	42,662.1 (42,662.1)	16	2,567 (2,567)	26,301.8 (26,301.8)		1,744 (1,744)	14,248.8 (14,248.8)	11	385 (385)	2,111.5 (2,111.5)

주 : ( )는 지구내 구간 연장 · 면적임.

②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	45	주간선도로	5,455	중산동 구역계	대구도시계획 구역계(금구리)	일반도로		건고 제576호 (69. 9.29)	지구내 구간 폭:22.5m 연장:369m
소계	-	-	-	-	-	5,455	-	-	-	-	-	지구내구간 연장:369m
기정	대로	2	7	30	주간선도로	3,090	광로3-1 (부적리)	대로2-2 (갑제동)	일반도로		건고 제576호 (69. 9.29)	지구내 구간 폭:3m 연장:65m 버스베이 1개소 확보
기정	대로	2	압1	30	주간선도로	382	대로2-7 (부적리 681-1)	신대리 287-2	일반도로		경북고시 제99-183호 (99. 8. 3)	버스베이 2개소 확보
소계	-	-	-	-	-	3,472	-	-	-	-	-	지구내구간 연장:447m
기정	중로	1	압1	20	보조간선도로	507	신대리 232-7	대로2-압1 (신대리 706)	일반도로		경산시고시 제99-34호 (99. 8. 9)	
기정	중로	1	압2	20	보조간선도로	687	광로3-1 부적리	중로1-압1 신대리	일반도로		〃	버스베이 1개소 확보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압4	20	집산도로	421	대로2-7	중로1-압2	일반도로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소계	-	-	-	-	-	1,615	-	-	-	-	-	지구내 구간 연장:1,615m
기정	중로	2	25	15	집산도로	820	대로2-7 조영동	대로2-압1 갑제동	일반도로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지구내구간 폭:7.5m 연장:325m
기정	중로	2	압6	18	집산도로	164	중로1-압4	소로1-압4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압7	18	집산도로	464	중로1-압1	중로1-압4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압8	18	집산도로	338	대로2-압1	중로2-압7	일반도로		〃	
소계	-	-	-	-	-	1,786	-	-	-	-	-	지구내 구간 연장:1,291m
기정	소로	1	압17	10	국지도로	550	중로2-압6	소로1-압17	일반도로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기정	소로	1	입18	10	국지도로	111	소로1-압17	소로1-압17	일반도로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압19	10	국지도로	109	소로1-압17	소로1-압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0	10	국지도로	20	중로2-압6	소로1-압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1	10	국지도로	20	중로1-압4	소로1-압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2	10	국지도로	572	중로2-압6	소로1-압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3	10	국지도로	99	소로1-압22	소로1-압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4	10	국지도로	117	소로1-압22	소로1-압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5	10	국지도로	20	중로2-압6	소로1-압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6	10	국지도로	20	중로1-압4	소로1-압2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7	10	국지도로	272	중로1-압4	중로2-압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8	10	국지도로	126	중로2-압7	소로1-압2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29	10	국지도로	118	소로1-압27	소로2-압1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30	10	국지도로	178	중로2-압8	소로2-압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압31	10	국지도로	215	대로2-압1	중로2-25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소계	-	-	-	-	-	2,567	-	-	-	-	-	지구내 구간 연장:2,567m
기정	소로	2	압8	8	국지도로	214	소로1-압28	소로1-압27	일반도로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기정	소로	2	압9	8	국지도로	101	소로1-압27	소로2-압8	일반도로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기정	소로	2	압10	8	국지도로	101	소로1-압27	소로2-압8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압11	8	국지도로	499	소로1-압27	소로1-압3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압12	8	국지도로	79	소로1-압27	소로2-압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압13	8	국지도로	76	소로1-압27	소로2-압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압14	8	국지도로	102	소로1-압29	소로2-압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압15	8	국지도로	86	소로1-압29	소로2-압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압16	8	국지도로	91	소로1-압29	소로2-압17	일반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압17	8	국지도로	121	소로1-압30	소로1-압2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압18	8	국지도로	152	소로1-압30	소로2-압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압19	8	국지도로	122	소로2-압11	소로2-압11	일반도로		〃	
소계	-	-	-	-	-	1,744	-	-	-	-	-	
기정	소로	3	압42	5	특수도로	20	광로3-1	소로1-압17	보행자전용도로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기정	소로	3	압43	5	특수도로	20	중로1-압4	소로1-압17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압44	5	특수도로	20	광로3-1 (신내리 432)	중로2-압6 (신내리 432)	보행자전용도로		〃	
변경	소로	1	압43	11	국지도로	20	광로3-1 (신내리 432)	중로2-압6 (신내리 43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압45	5	특수도로	20	중로1-압4	소로1-압22	보행자전용도로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압46	5	특수도로	20	대로2-7	소로1-압2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압47	5	특수도로	20	대로2-7	소로1-압2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압48	5	특수도로	21	중로1-압4	소로1-압22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압49	5	특수도로	17	중로2-압7	소로2-압8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압50	5	특수도로	18	중로1-압4	소로2-압1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압51	5	특수도로	10	대로2-7	소로2-압1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압52	5	특수도로	32	중로2-압8	소로2-압11	보행자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압53	5	특수도로	187	중로1-압2	중로2-압7	보행자전용도로		〃	
소계	-	-	-	-	-	385	-	-	-	-	-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 부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계	-	-	-	4,175.7	-	4,175.7		
기정	12	노외 주차장	신대리 471	2,291.5	-	2,291.5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기정	13	노외 주차장	신대리 415	1,884.2	-	1,884.2	〃	

3) 녹지 결정(변경)조서(변경있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계	-	-	-	21,608.5	감) 244.9	21,363.6	-	지구내 21,363.6㎡
기정	10	완충 녹지	신대리 374, 480, 484	11,830.4	-	11,830.4	경상북도고시 제316호 (76. 12. 31)	지구내 11,830.4㎡
기정	86	완충 녹지	압량면 신대리 634	1,172.0	-	1,172.0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지구내 1,172.0㎡
기정	87	완충 녹지	압량면 신대리 671	2,445.1	-	2,445.1	〃	지구내 2,445.1㎡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88	완충녹지	압량면 신대리 704	1,750.2	-	1,750.2	〃	지구내 1,750.2㎡
기정	89	완충녹지	압량면 신대리 708	880.0	-	880.0	〃	지구내 880.0㎡
기정	90	완충녹지	압량면 신대리 710	1,179.2	-	1,179.2	〃	지구내 1,179.2㎡
기정	91	완충녹지	압량면 신대리 538	868.1	-	868.1	〃	지구내 868.1㎡
기정	92	완충녹지	압량면 신대리 488	1,238.6	-	1,238.6	〃	지구내 1,238.6㎡
폐지	93	완충녹지	압량면 신대리 390, 433 소로3-압44호선변(양측)	244.9	감) 244.9	-	〃	-

4)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계	-	-	-	-	10,682.4	-	10,682.4	-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84	신대·부적 1공원	어린이 공원	압량읍 신대리 632	4,005.8	-	4,005.8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기정	85	신대·부적 2공원	어린이 공원	압량읍 신대리 470	2,768.4	-	2,768.4	〃	
기정	86	신대·부적 3공원	어린이 공원	압량읍 신대리 508	1,516.6	-	1,516.6	〃	
기정	87	신대·부적 4공원	어린이 공원	압량읍 신대리 416	2,391.6	-	2,391.6	〃	

5)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23	학교	초등 학교	압량읍 신대리 579	15,516.8	-	15,516.8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6)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계	-	-	-	-	4,213.0	-	4,213.0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압량읍 신대리 701	2,110.0	-	2,110.0	경산시고시 제2005-21호 (05. 5.12)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압량읍 신대리 373	2,103.0	-	2,103.0	〃	

7) 공공공지 결정조서(신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15	공공공지	압량읍 신대리 390, 433번지 일원 소로1-압43호선변(양측)	-	증) 106.3	106.3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7개 가구	45,186.3	186개 획지	45,186.3	
1	단1	1,804.6	-1	250.4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2	260.6	〃
			-3	260.6	〃
			-4	260.7	〃
			-5	260.7	〃
			-6	261.0	〃
			-7	250.6	〃
	단2	1,746.7	-1	300.5	〃
			-2	242.8	〃
			-3	242.6	〃
			-4	242.3	〃
			-5	242.2	〃
			-6	242.1	〃
			-7	234.2	〃
	단3	2,881.6	-1	219.0	〃
			-2	241.6	〃
			-3	241.5	〃
			-4	241.7	〃
			-5	241.8	〃
			-6	255.4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251.1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8	241.9	〃
			-9	241.7	〃
			-10	241.5	〃
			-11	241.4	〃
			-12	223.0	〃
	단4	2,990.1	-1	241.6	〃
			-2	250.6	〃
			-3	250.7	〃
			-4	250.7	〃
			-5	250.7	〃
			-6	251.5	〃
			-7	247.2	〃
			-8	250.0	〃
			-9	250.0	〃
			-10	250.3	〃
			-11	250.4	〃
			-12	246.4	〃
	단5	1,474.5	-1	234.3	〃
			-2	246.9	〃
			-3	254.7	〃
			-4	250.5	〃
			-5	248.2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6	239.9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단6	1,232.3	-1	244.8	〃
			-2	249.3	〃
			-3	249.1	〃
			-4	249.1	〃
			-5	240.0	〃
	단7	2,622.1	-1	231.0	〃
			-2	237.8	〃
			-3	237.9	〃
			-4	237.7	〃
			-5	238.4	〃
			-6	261.5	〃
			-7	229.0	〃
			-8	238.0	〃
			-9	237.9	〃
			-10	237.9	〃
			-11	235.0	〃
	단8	2,254.2	-1	215.9	〃
			-2	227.8	
			-3	227.9	〃
			-4	227.9	〃
			-5	227.6	〃
			-6	222.7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228.0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8	227.9	〃
			-9	228.0	〃
			-10	220.5	〃
	단9	2,251.0	-1	214.5	〃
			-2	227.1	〃
			-3	227.4	〃
			-4	227.7	〃
			-5	227.7	〃
			-6	223.4	〃
			-7	228.0	〃
			-8	227.8	〃
			-9	227.9	〃
			-10	219.5	〃
	단10	2,896.2	-1	233.5	〃
			-2	243.0	
			-3	243.2	〃
			-4	243.3	〃
			-5	243.2	〃
			-6	238.8	〃
			-7	239.0	〃
			-8	243.1	〃
			-9	243.1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0	243.1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11	243.1	〃
			-12	239.8	〃
	단11	2,950.2	-1	208.5	〃
			-2	210.6	〃
			-3	210.8	〃
			-4	210.6	〃
			-5	210.5	〃
			-6	210.5	〃
			-7	200.1	〃
			-8	219.6	〃
			-9	211.2	〃
			-10	211.1	〃
			-11	211.0	〃
			-12	210.9	〃
			-13	210.8	〃
			-14	214.0	〃
	단12	3,587.5	-1	250.8	〃
			-2	259.9	〃
			-3	262.4	〃
			-4	283.8	〃
			-5	257.5	〃
			-6	257.6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294.1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8	320.7	〃
			-9	324.2	〃
			-10	325.4	〃
			-11	250.1	〃
			-12	252.5	〃
			-13	248.5	〃
	단13	3,576.3	-1	217.2	〃
			-2	221.0	〃
			-3	221.0	〃
			-4	220.9	〃
			-5	220.9	〃
			-6	210.4	〃
			-7	340.2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8	314.9	〃
			-9	279.7	〃
			-10	359.1	〃
			-11	306.3	〃
			-12	221.0	〃
			-13	220.8	〃
			-14	222.9	〃
	단14	2,779.2	-1	283.7	〃
			-2	276.5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229.6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4	232.5	〃
			-5	232.6	〃
			-6	236.3	〃
			-7	229.7	〃
			-8	232.5	〃
			-9	232.4	〃
			-10	264.0	〃
			-11	329.4	〃
	단15	4,133.4	-1	278.9	〃
			-2	230.4	〃
			-3	230.4	〃
			-4	230.4	〃
			-5	230.2	〃
			-6	230.3	〃
			-7	230.3	〃
			-8	230.2	〃
			-9	225.6	〃
			-10	225.5	〃
			-11	230.2	〃
			-12	230.0	〃
			-13	229.7	〃
			-14	229.6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5	229.6	〃
			−16	315.2	〃
			−17	326.9	〃
	단16	3,633.0	−1	259.9	〃
			−2	230.4	〃
			−3	230.4	〃
			−4	230.4	〃
			−5	230.2	〃
			−6	230.0	〃
			−7	230.0	〃
			−8	223.7	〃
			−9	223.8	〃
			−10	229.8	〃
			−11	229.9	〃
			−12	230.0	〃
			−13	230.0	〃
			−14	317.1	〃
			−15	307.4	〃
	단17	2,373.4	−1	233.1	〃
			−2	239.6	〃
			−3	239.6	〃
			−4	239.5	〃
			−5	233.2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6	233.7	〃
			-7	240.2	〃
			-8	240.5	〃
			-9	240.4	〃
			-10	233.6	〃

2)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개 가구	147,076.3	8개 획지	147,076.3	
1	아1	43,187.3	-1	21,593.3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2	21,594.0	〃
	아2	32,583.3	-1	16,283.7	〃
			-2	16,299.6	〃
	아3	54,027.7	-1	19,081.1	〃
			-2	17,453.9	〃
			-3	17,492.7	〃
	아4	17,278.0	-1	17,278.0	〃

3)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6개 가구	39,209.6	82개 획지	39,209.6	
1	준1	2,949.6	-1	421.0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2	412.9	〃
			-3	413.0	〃
			-4	413.0	〃
			-5	413.1	〃
			-6	405.6	〃
			-7	471.0	〃
	준2	2,991.0	-1	592.8	〃
			-2	599.2	〃
			-3	598.8	〃
			-4	598.4	〃
			-5	601.8	〃
	준3	3,794.4	-1	421.0	〃
			-2	429.0	〃
			-3	425.8	〃
			-4	419.9	〃
			-5	421.9	〃
			-6	420.4	〃
			-7	424.2	〃
			-8	425.6	〃
			-9	406.6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준4	4,370.4	-1	434.7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2	436.4	〃
			-3	435.9	〃
			-4	436.2	〃
			-5	452.3	〃
			-6	443.5	〃
			-7	435.5	〃
			-8	435.6	〃
			-9	435.7	〃
			-10	424.6	〃
	준5	1,479.4	-1	480.7	〃
			-2	493.1	〃
			-3	505.6	〃
	준6	2,086.0	-1	488.9	〃
			-2	502.8	〃
			-3	539.0	〃
			-4	555.3	〃
	준7	1,465.4	-1	499.3	〃
			-2	489.7	〃
			-3	476.4	〃
	준8	2,654.2	-1	652.3	〃
			-2	667.8	〃
			-3	657.5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4	676.6	접한 획지와 합병 가능
	준9	1,475.6	-1	504.2	〃
			-2	492.5	〃
			-3	478.9	〃
	준10	1,363.0	-1	452.3	〃
			-2	449.3	〃
			-3	461.4	〃
	준11	3,477.3	-1	440.4	〃
			-2	461.8	〃
			-3	462.2	〃
			-4	461.4	〃
			-5	409.3	〃
			-6	411.8	〃
			-7	412.1	〃
			-8	418.3	〃
	준12	4,285.3	-1	419.4	〃
			-2	429.3	〃
			-3	429.4	〃
			-4	429.0	〃
			-5	363.2	〃
			-6	499.7	〃
			-7	429.1	〃
			-8	429.2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9	429.4	〃
			-10	427.6	〃
	준13	1,982.1	-1	494.2	〃
			-2	502.4	〃
			-3	501.8	〃
			-4	483.7	〃
	준14	835.0	-1	405.2	〃
			-2	429.8	〃
	준15	1,593.5	-1	518.0	〃
			-2	522.6	〃
			-3	552.9	〃
	준16	2,407.4	-1	599.4	〃
			-2	601.2	〃
			-3	596.0	〃
			-4	610.8	〃

4)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개 가구	19,692.5	3개 획지	19,692.5	
1	주1	19,692.5	주1	2,291.5	주차장
	주2		주2	1,884.2	주차장
	초1		초1	15,516.8	초등학교

5)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개 가구	46,676.0	2개 획지	46,676.0	
1	기타1	46,676.0	-1	44,776.0	교육 · 연구 · 복지시설 분할 및 합병 가능
	종1		-1	1,900.0	종교용지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단1 ~ 단17	단1-1 ~ 단17-10	지정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 포함), 다가구주택 • 점포주택(1층에 한한다) - 단독주택 및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 안마시술소 제외) - 단, 점포주택의 근린생활시설 설치규모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1층 전층 필로티구조 주차장일 경우 2층을 1층으로 본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만 적용) - 예외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지상 4층 이하
			배치	• 남향·남동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형태	• 지붕은 경사 및 곡선형 지붕을 권장(평지붕은 전체지붕의 10분의 2 이내에서 허용) • 건축물의 외벽의 의장, 재료, 색체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토록 권장 •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한다. •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설치토록 권장, 대문은 투시형 권장 • 폭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설치
			색채	• 색채권장
			건축(한계)선	-

2)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아1 ~ 아4	아1-1 ~ 아4-1	지정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제2조제6호·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과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22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지상 20층 이하(단, 부대복리시설 지상 3층 이하) - 획지내 아파트 주동의 평균층수와 인접한 획지내 아파트 주동의 평균층수 차이는 3개층 이내로 계획 권장 - 획지내 주동 중 1/4이상은 다른 주동의 최저층수보다 3층 이상의 높이변화를 주어 스카이라인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계획 권장
			배치	• 가급적 남향 또는 동남향, 남서향 위주의 배치를 권장 • 획지내 모든 아파트 주동의 전면 길이를 합한 총길이의 10% 이상을 주된 건물의 향과 직각 또는 변화 있는 배치권장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80m 이하로 배치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 직각배치구간(권장) : 중로1-압4 및 중로 1-압1호선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는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도록 배치권장 - 판상형, 다각형 또는 타원형 : 기울기 ±30°범위내의 배치에 대하여 직각배치로 인정 - 탑상형 또는 원형 : 기울기 ±45°범위내의 배치에 대하여 지각배치로 인정 - 종교시설과 연접한 공동주택단지 배치계획 설계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동의 측면이 종교시설과 연접토록 권장
			형태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조형적 형태의 지붕 설치권장 • 아파트 주동의 전면길이가 길 경우 일부분을 전후로 돌추 또는 후퇴시키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게 유도토록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색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권장
			건축(한계)선	• 중로1-압2호선 남측 완충녹지변 : 5m(차폐녹지 설치) • 소로3-압53호선 양측변 : 5m(조경시설 등 설치)
			기타	•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반영 • 종교시설 연접 공동주택용지의 배치계획 설계시 종교시설 감안 인접대지경계선에 녹지기능 보강하여 종교시설내 조경·녹지시설과 더불어 충분한 완충 공간 형태토록 함

3)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준1 ~ 준16	준1-1 ~ 준16-6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학교제외)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에 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 · 장례식장 제외)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 석유판매소 · 액화가스 취급소 ·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함) • 공공용시설(교도소 · 감화원 · 군사시설 · 발전소 제외)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 예외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불허용도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지상 6층 이하
			배치	• 건축물의 배치는 전면도로방향과 평행하도록 배치 •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전면 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권장
			형태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미 환기구 등)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 조립식건물 및 샌드위치판넬 외장은 지양을 권장한다. • 폭원 18m 이상의 도로에 면한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단,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 폭원 1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에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 설치
			색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건축(한계)선	–

4) 공공시설용지(주차장, 초등학교)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주1	주1,주2	지정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초1	초1	지정용도	• 초등학교 및 그 부속용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지상 4층 이하
			배치	• 부지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동남향 및 남서향 위주로 배치를 권장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여 방향을 배치 • 운동장시설은 건축물 전면에 배치 권장
			형태	•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미 환기구 등)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대문은 미관의 증진을 위해 투시형 권장
			색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건축(한계)선	-

5)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기타1	-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에서 연수원, 학원, 연구소(실습지), 도서관,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에 필요한 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지상 5층 이하
			배치	•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하도록 권장
			형태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의 경우 옥상조경 등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 도입 권장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구조물(난방, 냉방설비 및 환기구 등)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권장 • 담장의 높이는 1.5m 이하로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 대문은 미관의 증진을 위해 투시형 권장
			색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건축(한계)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종1	-1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납골당제외) 및 그 부대시설 • 부속시설로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 지상 7층 이하
			배치	• 중로1-압1호선변의 경우 가급적 직각배치토록 함
			형태	• 개별 건축계획을 수용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권장 • 건축물의 외부에 냉각탑 등 건축설비 노출 금지 권장 • 담장은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1.2m 초과할 수 없도록 권장
			색채	•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권장
			건축(한계)선	•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기타사항	• 공동주택용지 경계부에 부지내 조경시설 집중 배치하여 주변지역과의 민원발생 최소화되도록 함 • 공동주택용지 경계부에 충분한 녹음수 식재 및 휴식시설 배치하여 단순 차폐기능의 아닌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토록 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1	단1-1~단1-7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2-압7호선 및 소로1-압28호선 구간	중로2-압7호선
1	단2-1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2-압7호선구간	중로2-압7호선

2)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1	아1-1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1-압4호선과 중로2-압7호선 교차지점에서 50m구간 - 중로1-압4호선과 중로1-압2호선 교차지점에서 70m구간 • 차폐조경 설치구간 지정 - 대지경계선과 완충녹지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사이 구간에 차폐조경 설치(단, 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중로1-압4호선 중로2-압7호선
1	아1-2	• 차폐조경 설치구간 지정 - 대지경계선과 완충녹지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사이 구간에 차폐조경 설치(단, 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중로2-압7호선
1	아2-1	• 차폐조경 설치구간 지정 - 대지경계선과 완충녹지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사이 구간에 차폐조경 설치(단, 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중로2-압7호선
1	아2-2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1-압1호선과 중로1-압2호선 교차지점에서 70m 구간	중로1-압1호선 중로2-압7호선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중로1-압1호선과 중로2-압7호선 교차지점에서 50m 구간 • 차폐조경 설치구간 지정 – 대지경계선과 완충녹지변에 지정된 건축한계선 사이 구간에 차폐조경 설치(단, 진·출입구 부분은 제외)	
1	아3-1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1-압1호선과 중로2-압7호선 교차지점에서 40m 구간 – 중로2-압7호선과 중로2-압8호선 교차지점에서 50m 구간	중로1-압1호선 중로2-압7호선 중로2-압8호선
1	아3-2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로2-압1호선과 중로2-압8호선 교차지점에서 60m 구간	중로2-압8호선
1	아3-3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로2-압1호선과 중로1-압1호선 교차지점에서 60m 구간	중로1-압1호선
1	아4-1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로2-압1호선과 소로1-압31호선 교차지점에서 60m구간 – 중로2-25호선과 소로1-압31호선 교차지점에서 60m 구간	소로1-압31호선

3)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1	준1-7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1-압4호선 구간	중로1-압4호선
1	준2-1~준2-5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광로3-1호선 구간	광로3-1호선
1	준5-1~준5-3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1-압4호선 및 소로1-압21호선 구간	중로1-압4호선
1	준7-1준7-3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2-압6호선 구간 및 소로1-압20호선구간	중로2-압6호선
1	준8-1~준8-4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광로3-1호선 및 대로2-7호선 구간	광로3-1호선 대로2-7호선
1	준9-1~준9-3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2-압6호선 및 소로1-압25호선 구간	중로2-압6호선
1	준10-1~ 준10-3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1-압4호선, 중2-압6, 소로1-압25호선 구간	중로1-압4호선 중로2-압6호선
1	준13-1~ 준13-4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1-압4호선 및 소로1-압26호선구간	중로1-압4호선
1	준14-1~ 준14-2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1-압4호선 및 소로1-압26호선 구간	중로1-압4호선
1	준15-1~ 준15-3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로2-7호선 및 중로1-압4호선 구간	대로2-7호선 중로1-압4호선
1	준16-1~ 준16-4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로2-7호선 구간	대로2-7호선

4) 공공시설용지(초등학교)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1	초1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중로2-압7호선과 중로2-압8호선 교차지점에서 50m구간	중로2-압7호선 중로2-압8호선

5) 기타시설용지(교육 · 연구 · 복지시설)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1	기타1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로2-7호선과 대로2-압1호선 교차지점에서 50m구간 - 대로2-7호선과 중로2-25호선 교차지점에서 50m구간	대로2-7호선 대로2-압1호선 중로2-25호선

(첨부) 신대 · 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별첨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경산시청 도시과(☏ 053-810-5515)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고시 제2022-52호

군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정리 도시계획도로(중3-1외)개설공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 449-1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군위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 ~ 2022.6.30.	• 인가일 ~ 2023.6.30.

2022년 6월 20일

군 위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규모(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 시행지 위 치	사 업 규 모	사 업 시행기간
도시계획도로 (중로3-1, 소로2-27,소로3-53,소로2-22) 개설공사	정리 도시계획도로 (중3-1외) 개설공사	군위읍 정리 449-1번지 일원	L=660m B=6~8m	인가일~ 2023.06.30.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나. 성 명 : 군위군수

3. 수용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편입(㎡)	비고(용도지역 구분)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구분
계					5,461						
1	군위	정	449-1	답	37		군위군				
2	군위	정	450-2	전	308		군위군				
3	군위	정	451-1	답	123		군위군				
4	군위	정	452-1	답	102		군위군				
5	군위	정	453-1	전	64		군위군				
6	군위	정	442-1	전	4	자연녹지지역	김진옥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57			
					55	제1종일반주거지역					
7	군위	정	산43-1	임야	298		군위군				
8	군위	정	401-20	대	289		김병동	경북 군위군 · 읍 군청로 308-19	군위농업협동조합	경북 군위군 · 읍 중앙길 128	근저당권 지상권
9	군위	정	446-1	전	321		군위군				
10	군위	정	425-1	대	18		군위군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편입(㎡)	비고(용도지역구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11	군위	정	444-1	답	233		군위군				
12	군위	정	438-1	전	533		군위군				
13	군위	정	441-1	전	27		군위군				
14	군위	정	443-1	유지	42		군위군				
15	군위	정	439-3	전	285	자연녹지지역	김상희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75			
					362	제1종일반주거지역					
16	군위	정	439-6	답	55	자연녹지지역	김상희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475			
					54	제1종일반주거지역					
17	군위	정	산44-3	임야	25	자연녹지지역	김원종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4			
					46	제1종일반주거지역					
18	군위	정	437-11	대	66		군위군				
19	군위	정	435-13	도	82		군위군				
20	군위	정	435-11	대	18		군위군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편입(㎡)	비고(용도지역구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21	군위	정	435-8	도	76		군위군				
22	군위	정	435-12	대	50		군위군				
23	군위	정	433-6	답	1		군위군				
24	군위	정	433-4	도	26		군위군				
25	군위	정	433-7	답	79		군위군				
26	군위	정	248-1	도	390		국토교통부				
27	군위	정	311-3	답	340		군위군				
28	군위	정	437-12	도	34		군위군				
29	군위	정	436-6	도	18		군위군				
30	군위	정	436-10	대	9		군위군				
31	군위	정	436-11	도	6		군위군				
32	군위	정	431-9	도	70		군위군				

연번	읍면	리	지번	지목	편입(㎡)	비고(용도지역구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33	군위	정	431-12	대	2		군위군				
34	군위	정	432-3	도	54		군위군				
35	군위	정	215-1	답	292		군위군				
36	군위	정	315-6	답	567		군위군				

□ **지장물조서**

연번	읍면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구분
1	군위	정	439 -1	호두나무	50년	1	주 (일괄)	김상희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475			
2	군위	정	439 -1	감나무	10년	1	주	김상희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475			
3	군위	정	439 -1	자두나무	5년	1	주	김상희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475			
4	군위	정	401-4	주목	10년	1	주 (일괄)	김병동	경북 군위군 · 읍 군청로 308-19			
5	군위	정	401-4	두충나무	20년	50	주	김병동	경북 군위군 · 읍 군청로 308-19			
6	군위	정	442	대추나무	10년	2	주 (일괄)	김진옥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57			
7	군위	정	442	두릅나무	5년	30	주	김진옥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57			
8	군위	정	442	앵두나무	10년	1	주	김진옥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57			

연번	읍면	리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구분
9	군위	정	442	복숭아나무	10년	2	주	김진옥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57			
10	군위	정	442	자두나무	10년	1	주	김진옥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57			
11	군위	정	442	기타수목	3년	1	주	김진옥	경북 군위군 · 읍 정동 457			
12	군위	정	산44	창고	토조 스레트	12	㎡	김원종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산44			
13	군위	정	산44	세면장 (가닥포함)	블록 스레트	4.8	㎡ (식)	김원종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산44			
14	군위	정	산44	장독대 및 수도대	콘크리트	1	식	김원종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산44			
15	군위	정	산44	대문(문주포함)	철제	1	식	김원종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산44			
16	군위	정	산44	자두나무	10년	1	주	김원종	경북 군위군 · 읍 정리 산44			

4.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관계서류 및 도면 : 게재 생략 (변경없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

구미시 공고 제2022-1173호

공인 등록 및 폐인 공고

구미시 공인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구 미 시 장

1. 등록 및 폐기 연월일 : 2022. 6. 20.

2. 등록 및 폐기 사유 : 노후 인증기 교체 및 공인 사고(분실)

3. 공인명(인영)

구분	등록 공인		폐기(분실)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각	원호이동민원실전용 구미시고아읍장인		원호이동민원실전용 구미시고아읍장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분실)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각	원호이동민원실전용 구미시장인		원호이동민원실전용 구미시장인	
개각	민원실전용 구미시도개면장인		민원실전용 구미시도개면장인	
개각	도개면전용 구미시장인		도개면전용 구미시장인	
개각	민원실전용 구미시차량등록 사업소장인		민원실전용 구미시차량등록 사업소장인	
개각	민원실전용 구미시차량등록 사업소장인		민원실전용 구미시차량등록 사업소장인	
개각	민원실전용 구미시 산동읍장인		민원실전용 구미시 산동읍장인	

구분	등록 공인		폐기(분실) 공인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개각	산동읍전용 구미시장인		산동읍전용 구미시장인	
폐기	-	-	산동읍전용 구미시장인(인증기)	

영주시 공고 제2022-819호

영주 도시계획시설(2토지 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주시 가흥동 1457-2번지 도시계획시설(2토지제2공원)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영 주 시 장

1. 열람 기간 : 2022. 06. 20.(월) ~ 2022. 07. 06.(수)

2. 열람 장소 :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3. 사업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주시 가흥동 145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ㆍ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

ㆍ명칭 : 2토지 제2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ㆍ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670.2㎡

ㆍ 실시계획인가 면적 : 670.2㎡

ㆍ 시설개요

구분	실시계획 인가면적(㎡)	비고
합계	670.2	
도로 및 광장	66.5	
휴양시설	62.7	
유희시설	197.4	
운동시설	47.1	
녹지	296.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ㆍ 성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ㆍ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영주시청

마. 사업기간

ㆍ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ㆍ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ㆍ 게재 생략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열람도서 비치)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054-639-68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공고 제2022-820호

영주 도시계획시설(3토지 제1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주시 휴천동 694-6번지 도시계획시설(3토지제1공원)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영 주 시 장

1. 열람 기간 : 2022. 06. 20.(월) ~ 2022. 07. 06.(수)

2. 열람 장소 :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3. 사업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주시 휴천동 694-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ㆍ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

ㆍ명칭 : 3토지 제1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ㆍ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985.1㎡

ㆍ 실시계획인가 면적 : 985.1㎡

ㆍ 시설개요

구분	실시계획 인가면적(㎡)	비고
합계	985.1	
도로 및 광장	220.5	
휴양시설	35.2	
유희시설	232.8	
운동시설	28.0	
녹지	46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ㆍ 성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ㆍ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영주시청

마. 사업기간

ㆍ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ㆍ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ㆍ 게재 생략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열람도서 비치)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054-639-68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공고 제2022-821호

영주 도시계획시설(1토지 제1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안)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 공고

영주시 휴천동 494-14번지 도시계획시설(1토지제1공원)사업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계 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본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영 주 시 장

1. 열람 기간 : 2022. 06. 20.(월) ~ 2022. 07. 06.(수)

2. 열람 장소 :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3. 사업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주시 휴천동 494-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ㆍ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

ㆍ명칭 : 1토지 제1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ㆍ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 661.1㎡

ㆍ 실시계획인가 면적 : 661.1㎡

ㆍ 시설개요

구분	실시계획 인가면적(㎡)	비고
합계	661.1	
도로 및 광장	59.0	
휴양시설	16.0	
유희시설	224.0	
운동시설	37.0	
편익시설	28.0	
녹지	297.1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ㆍ 성명 : 경상북도 영주시장

ㆍ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2동), 영주시청

마. 사업기간

ㆍ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ㆍ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ㆍ 게재 생략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열람도서 비치)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공원관리팀(054-639-68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공고 제2022-437호

군위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산48번지 일원 ‘군위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군위읍사무소 및 군위군 지역활력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군 위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흥리 산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칭 : 이지스카이CC 조성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사업

3. 사업의 규모

○ 전체면적 : 891,436㎡ **"변경없음"**

용 도 구 분	규 모	부지면적(㎡)	비 율(%)	비 고
체육시설용지	대중제 18홀, 6,120m	226,726	25.4	
건축시설용지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동	8,933	1.0	
기반시설용지	단지내진입도로, 카트로, 배수지, 주차장, 오수처리장	79,389	8.9	
녹 지 용 지	원지형보전녹지	319,758	35.9	
	복원녹지	256,630	28.8	
계	-	891,436	100.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 변경)

○ 기정

- 성명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재, 김영진
- 법인등록번호 : 110111-2003236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 **변경**

- 성명 : 주식회사 이지컨트리클럽 대표이사 박현철
- 법인등록번호 : 174311-0004707
- 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대흥1길 48-148

5. 사업의 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기간 : 2022. 06. 20. ~ 2022. 07. 04.까지

○ 장소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군위읍사무소

○ 관계서류 : 게제생략(관계서류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군위읍사무소에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의견내용 :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한 의견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 지역활력과(☏054-380-6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계					910,224	891,436					
1	군위읍	대흥리	산37	임	71,226	71,226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	"	"	산40-7	임	42,070	42,070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	"	"	산40-11	임	26,446	26,446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	"	"	산40-12	임	1,972	1,972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	"	"	산42	임	7,537	7,53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6	"	"	산46	임	198	198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7	"	"	산47	임	1,190	1,190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8	"	"	산48	임	649,686	649,686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9	"	"	산57	임	19,799	19,799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10	"	"	산106	구	643	643		국(건설부)			
11	"	"	산107	구	1,852	1,852		국(건설부)			
12	"	"	산109	구	1,223	1,223		국(건설부)			
13	"	"	산110	구	1,124	1,124		국(건설부)			
14	군위읍	대흥리	산111	구	4,100	4,100		국(건설부)			
15	"	"	산115	구	1,819	151		국(건설부)			
16	"	"	산116	구	103	103		국(건설부)			
17	"	"	산117	구	1,554	1,554		국(건설부)			
18	"	"	산118	구	1,910	646		국(건설부)			
19	"	"	1	답	909	909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20	"	"	2	전	102	102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1	"	"	3	전	1,114	1,114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2	"	"	4	답	744	744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3	"	"	5	답	3,987	3,98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4	"	"	5-1	목	370	370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5	"	"	6	전	701	701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6	"	"	7	전	192	192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7	"	"	16	답	572	572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28	"	"	17	답	757	75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29	"	"	18	답	1,157	1,15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0	"	"	19	전	2,797	2,79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1	군위읍	대흥리	20	전	357	35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2	"	"	21	전	96	96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3	"	"	22	전	264	264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4	"	"	56	전	625	625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5	"	"	57	전	311	311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36	"	"	58	답	817	81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7	"	"	59	답	1,683	1,683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8	"	"	633	임	99	99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39	"	"	634	임	1,359	1,359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0	"	"	634-1	임	1,481	1,481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1	"	"	635	답	3,474	3,474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2	"	"	636	답	1,081	1,081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3	"	"	637	답	1,004	1,004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4	"	"	639	전	2,004	2,004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사항
45	"	"	642	답	2,717	2,71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6	"	"	643	임	797	797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7	"	"	644	임	532	532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8	군위읍	대흥리	698	답	2,970	2,970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49	"	"	699	답	1,829	1,829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0	"	"	741	답	413	413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1	"	"	760	임	182	182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2	"	"	760-1	전	1,174	1,174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53	"	"	761	답	800	800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4	"	"	762	답	2,065	2,065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5	"	"	763	답	2,714	2,714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6	"	"	764	답	1,422	1,422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7	"	"	765	전	1,880	1,880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8	"	"	766	임	1,431	1,431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59	"	"	767	전	116	116	서울 강남 테헤란로419,20층	우리자산신탁(주)			
60	"	"	928	구	585	585		국(농림부)			
61	"	"	933	구	1,319	1,319		국(농림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면	리			지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사항
62	군위읍	대흥리	934	구	788	788		국(농림부)			
63	"	"	935	구	1,369	1,369		국(농림부)			
64	"	"	936	구	1,091	1,091		국(농림부)			
65	"	"	937-1	구	368	368		국(농림부)			
66	"	"	952	구	18,898	4,439		국(농림부)			
67	"	"	956	도	1,817	420		국(농림부)			
68	"	"	956-1	도	438	438		국(농림부)			

영양군 공고 제2022-471호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열람공고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의 영양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영 양 군 수

1. 군계획시설사업 내용

사 업 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기정	변경		
영양제2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산60번지 일원	115,697	116,507	주식회사 영양제2풍력 발전	실시계획인가일 ~ 2024년 8월

2. 열람기간 : 2022. 6. 20. ~ 2022. 7. 4.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팀

4.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양군청 지역개발과 도시팀(054-680-63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서류 및 도면은 영양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편 입 용 지 조 서 】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면	리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합 계				10필지			115,697 116,507	115,697 116,507			
1	기정 변경	석보	삼의	산60	임	518,876 518,876	11,136 11,136	11,136 11,136	국	산림청	
2	기정 변경	"	"	산63	임	75,372 75,372	14,301 14,301	14,301 14,301	㈜영양제2풍력발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3	기정 변경	"	"	산62	임	89,256 89,256	8,807 8,807	8,807 8,807	㈜영양제2풍력발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4	기정 변경	"	"	산54	임	551,874 551,874	36,018 36,018	36,018 36,018	㈜영양제2풍력발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5	기정 변경	"	"	산54-1	임	16,986 16,986	3,017 3,017	3,017 3,017	㈜영양제2풍력발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면	리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6	기정 변경	석보	택전	산46-1	임	865,388 865,388	3,091 3,091	3,091 3,091	국	산림청	
7	기정 변경	"	"	산46-2	임	368,529 368,529	5,882 5,882	5,882 5,882	국	산림청	
8	기정 변경	석보	화매	산41	임	922,711 922,711	27,592 28,244	27,592 28,244	㈜영양제2풍력발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9	기정 변경	석보	삼의	산50	임	233,995 233,995	3,405 3,563	3,405 3,563	국	산림청	
10	기정 변경	"	"	산71	구	1,329 1,329	172 172	172 172	국	농수산부	
11	기정 변경	"	"	200	천	169,428 169,428	845 845	845 845	국	국토교통부	
12	기정 변경	"	"	83-1	임	866 866	866 866	866 866	㈜영양제2풍력발전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일련번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m^2)	편입면적 (m^2)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면	리				계	도시계획시설	성 명	주 소	
13	기정	"	"	202	도	1,279	189	18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279	189	189			
14	기정	"	"	84-2	도	598	376	376	김진휴 (주)영양 제2풍력발전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지품리 51,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변경					598	376	376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2-6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대체 압류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2. 6. 20.(월) ~ 2022. 7. 4.(월)

2. 공고방법 : 경상북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table>
<tr><td colspan="2">가. 제 목</td><td colspan="7">운행제한(과적)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대체 압류 통지</td></tr>
<tr><td rowspan="2">나.당사자</td><td>성 명</td><td colspan="7">손 형 *</td></tr>
<tr><td>주 소</td><td colspan="7">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28-18, 102동 108호(삼주강변타운)</td></tr>
<tr><td colspan="2" rowspan="2">다. 위반내용</td><td colspan="7">2018.4.25.(수) 지방도 905호선(성주 성주 금산)을 운행중 「도로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축중량 1.80톤을 초과(기준 : 10톤, 운행 : 11.80톤)</td></tr>
<tr><td colspan="7">2018.10.16.(화) 국지도 67호선(성주 용암 문명)을 운행중 「도로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축중량 1.95톤을 초과(기준 : 10톤, 운행 : 11.95톤)</td></tr>
<tr><td colspan="2">라. 압류재산</td><td colspan="7">2022년 5월 25일 재산(자동차)압류 : 58소5846
(공고일 기준 체납액 : 금1,848,000원)</td></tr>
<tr><td colspan="2">마. 법적근거</td><td colspan="7">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제1호</td></tr>
<tr><td colspan="2" rowspan="3">바. 기 타</td><td rowspan="3">문의처</td><td>기관명</td><td>경상북도</td><td>부서명</td><td>남부건설사업소</td><td>담당자</td><td>박춘인</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3" rowspan="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td><td>전화번호</td><td>054)880-8255</td></tr>
<tr><td>모사전송</td><td>053)323-5991</td></tr>
</table>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2-6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대체 압류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2. 6. 20.(월) ~ 2022. 7. 4.(월)

2. 공고방법 : 경상북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table>
<tr><td colspan="2">가. 제 목</td><td colspan="7">운행제한(과적)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대체 압류 통지</td></tr>
<tr><td rowspan="2">나.당사자</td><td>성 명</td><td colspan="7">은 희 *</td></tr>
<tr><td>주 소</td><td colspan="7">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안로 81, 402동 1101호(범물동, 용지아파트)</td></tr>
<tr><td colspan="2">다. 위반내용</td><td colspan="7">2012.3.14.(수) 지방도 514호선(칠곡 가산 학하)을 운행중 「도로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축중량 1.85톤을 초과(기준 : 10톤, 운행 : 11.85톤)</td></tr>
<tr><td colspan="2">라. 압류재산</td><td colspan="7">2022년 5월 25일 재산(자동차)압류 : 10너2676
(공고일 기준 체납액 : 금885,000원)</td></tr>
<tr><td colspan="2">마. 법적근거</td><td colspan="7">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제1호</td></tr>
<tr><td colspan="2" rowspan="3">바. 기 타</td><td rowspan="3">문의처</td><td>기관명</td><td>경상북도</td><td>부서명</td><td>남부건설
사업소</td><td>담당자</td><td>박춘인</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3" rowspan="2">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td><td>전화번호</td><td>054)880-8255</td></tr>
<tr><td>모사전송</td><td>053)323-5991</td></tr>
</table>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